

2006청소년특별회의

두발제한과 청소년인권

1부-헤어스타일 쇼 / 2부-토론회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18:30 - 20:00

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주최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  청소년특별회의추진단

 한국청소년진흥센터
Korea Youth Services Center

2006청소년특별회의

두발제한과 청소년인권

한국청소년위원회





2006청소년특별회의추진단

우)110-721 서울시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10층 Tel. 02-6430-0962 / Fax. 02-6430-0927
Homepage : www.withyouth.or.kr / E-mail. wyouth@kysc.or.kr

2006청소년특별회의

두발제한과 청소년인권

1부 - 헤어스타일 쇼 / 2부 - 토론회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18:30 - 20:00

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주최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  청소년특별회의추진단

 한국청소년진흥센터
Korea Youth Services Center

두발제한과 청소년인권

인 쇄 : 2006년 10월

발 행 : 2006년 10월

저 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편

발 행 인 : 서 성 갑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4층

Tel. (02)6430-0962 / Fax. (02)6430-0927

<http://www.kyisc.or.kr>

인 쇄 처 : (주) 계문사 (02-725-5216)

관리번호 : KYSC-2006-0008

비매품

본 간행물은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KYSC-2006-0008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 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간다.

1998년 10월 25일

일 정 계 획 표

시 간	내 용	비 고
18:30~18:35 (오픈무대)	사회 : 양고운 (동아TV)	
	- 개회 (2')	서성갑 소장
18:35~19:05 (헤어쇼)	사회 : 양고운 (동아TV)	
	Stage 1 - 현실	
	Stage 2 - 동경	
	Stage 3 - 욕망	
	Stage 4 - 회귀	
	Stage 5 - 희망	
19:05~19:10	휴식 및 정리	
19:10~20:00 (토론회)	사회 : 최보성 (청소년특별회의·경기)	
	기조강연(10') 청소년인권의 재인식	곽노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제 1 청소년인권과 두발 자유화(10')	김진숙(21세기청소년 공동체희망 이사)
	발제 2 두발제한의 필요성과 부작용(10')	최재규(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잠실고등학교 교사)
	발제 3 두발제한의 대안 모색(10')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지정토론 2 (10')	유윤종(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 혁(청소년특별회의·전남)
	자유토론(10')	

목차

- 청소년헌장
- 2006청소년특별회의 일정계획표

1부 헤어스타일 쇼	3
■ Stage 1 - 현실	5
■ Stage 2 - 동경	6
■ Stage 3 - 욕망	7
■ Stage 4 - 회귀	8
■ Stage 5 - 희망	9
2부 토론회	11
◆ 기조강연 : 청소년인권의 재인식	13
곽 노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1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	22
김 진 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주제발표 2 청소년의 눈으로 두발자유화를 보자	28
최 재 규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잠실고 교사)	
☞ 주제발표 3 두발제한의 대안 모색	32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전공 교수)	
☞ 지정토론 1 기본권으로서의 두발자유	39
유 윤 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지정토론 2 사회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42
한 혁 (2006청소년특별회의, 전남/ 순천대 2년)	
참고자료	45

1부 헤어스타일 쇼

본부는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자신의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본부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Stage

현 실

헤어디자인 - 팀 "아크"
(사이리, 크리스기, 이용석, 이성진)

정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교복을 입은 모델이 등장과 함께 조금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로 각자의 자리로 걸어가 앉는다.

잠시 후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그들에 머리를 자른다.

헤어스타일은 조금은 하드하면서도 기존 대칭에서 벗어난,
현실에서의 조금은 답답하고 벗어나고픈 학생들에 마음을 표현한다.

2 Stage

동 경

헤어디자인 - 팀 "아크"
(사이리, 크리스기, 이용석, 이성진)

한 소녀가 나오면서 음악과 성우의 나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꿈과 생각을 이야기하면 교복을 입은 남녀 모델과 사복을 입은 남녀 모델이 나와 교복끼리, 사복끼리 워킹.

교복모델과 사복모델이 짝을 지어 앙상블을 이룬다.

헤어스타일은 업스타일과 칼라 스타일링으로 표현하여 밝고 즐거운 분위기 연출

3 Stage

욕 망

헤어디자인 - 팀 "아크"
(사이리, 크리스기, 이용석, 이성진)

꿈을 넘어서 때론 벗어나고픈 욕망을 표현.

조금은 과장되고 전 stage보다는 UP된 스타일링

업스타일, 스타일링. 빠르고 강한음악을 사용하여 연출

4 Stage

회 귀

헤어디자인 - 공주영상대 헤어디자인과

70년대와 복고적인 의상과 전형적인 학생들에 헤어스타일을 통해 다시 한번 과거와 앞으로를 되 집어 보자는 내용

디자이너들의 복고 댄스와 연기 퍼포먼스 삽입

5 Stage

희 망

헤어디자인 - 이철 헤어커커

조명이 켜지면 학교가자는 소리와 함께 교복입은 남녀 학생들이 학교 등교 하는 장면을 연출

사복을 입은 학생등장하면 디자이너가 나와 기존 머리에서의 스타일링에 변화 시술을 통해 학교에서의 헤어스타일과 밖에서의 헤어스타일 이 공존 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을 제시.

이때 성우 나레이션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과 어른들에 바람을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을 이룬다는 내용을 표현.

이때 나머지 모델들이 사복을 갈아입고 야외로 놀러나가는 분위기 연출.

청소년인권 의 재인식

2부 토론회

1. 들어가며

“학령과 노년” 사이에 인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학령과 노년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갈수록 인종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최근 학령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 24일을 맞이 한 그로잉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등장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 이 회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이 도시의 발생된 인권 사건은 많은 학생과 교사, 자녀를 위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거나 이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 해서, 우리는 인권은 사회적 공간이나 조직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 인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인권은 인권과 지위를 부여하는 데로써, 모든 인권이며, 이에 대해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권만을 논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들을 인권으로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는 인권 청소년을 인권으로 보지 않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이들 청소년을 자신의 삶을 지키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권력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을, 인권은 인권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이 되어야 하는 단순한 보호적 개념으로만 볼 수 있다.

청소년인권의 재인식

곽노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I. 들어가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학생과 교사 사이는 자식과 부모 사이 같아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최근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한 고교생에 대해 학교 측이 다시 중징계 절차를 밟으려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 학교에 진입하려는 어느 인권단체 관계자를 저지하던 교사가 했던 말이다.

과연 이 교사의 말처럼 ‘인권’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 자녀와 부모 사이에 존재할 수 없거나, 이들의 원만한 관계에 장애물 정도로 밖에 치부될 수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권은 사제지간이나 부자지간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할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이며, 이해이고 존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온전한 삶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지 청소년을 간섭과 보호, 그리고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가능성의 존재이자 주체라고 인식하는데 미흡했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보호의 개념으로만 좁혀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은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청소년의 인권 개념 또한 단순한 보호에서 적극적 보장과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넓혀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 역시 청소년들의 불완전성에 따른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미래의 주인공이자 오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자주성, 창의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최대한의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청소년 인권 개념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이제 청소년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 본 후, 이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인권의 이해

가. 청소년의 권리(인권) 주체성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존중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권리 주체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과거 청소년들은 단순히 어른들의 소유물이나 피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을 삶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¹⁾

또한, 우리나라도 2003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참여정부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1)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동 협약은 아동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동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규범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동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권리가 일정 정도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²⁾,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입안자와 수행자들이 청소년들을 권리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가 삶을 개척하고 키워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로 간섭하고, 보호하며, 훈육시켜야 할 존재라는 전제를 달고 청소년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³⁾ 또한, 세계 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범 역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말하는 국민과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인간에는 청소년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아동이 사회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⁴⁾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⁵⁾ 역시 청소년이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아동관련 정책 조정 권한 가진 상설적 중앙기구 구성할 것,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 및 법률, 교칙을 개정할 것,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 시설 수용의 대안 개발할 것,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장애아, 여아, 이주노동자 자녀, 혼외 출생아에 대한 차별에 조치 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CRC/C/15/Add.197 2003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 전문 번역 인용)

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前文)의 내용 - 이는 협약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인정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라고 보아야 하며,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의무는 청소년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통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청소년의 미성숙을 보완하여 청소년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도록 보호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 청소년이 간섭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이 온전히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들 스스로가 삶을 개척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류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창조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⁶⁾도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이 깊이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청소년과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은 누구이며, 무엇이 청소년의 인권인가에 대하여서는 한 두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의해 탄생된 것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범위도 달리 파악되어지는 개념이므로, 청소년 인권도 상황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개념과 이념, 가치 등과 연계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고 규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이번 강연에서 만큼은 청소년의 개념을 중·고등학교 학생에 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되⁸⁾, 청소년의 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표1>과 같이

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6) 성민선(편) 2003,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119면

7) 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인권론, 15면

8)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본 강연에서 만큼은 아동의 개념에서 청소년의 개념을 분리해 내어 중·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연령에 준하는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미성년을 청소년으로 보고자 한다.

생존의 권리, 복지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크게 보호 및 복지권과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관점으로 접근하여⁹⁾, 어느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보호 및 복지권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자기결정 및 참여권	발달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 자신이 속한 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그 설명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보호 및 간섭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핵심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의료, 교육 등 성장에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

9)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생존의 권리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달의 권리에는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참여의 권리에는 다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 자신이 속한 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생존의 권리와 보호의 권리는 보호 및 복지권으로, 발달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는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반면, 청소년은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천부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을 청소년 인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전자를 양육의 관점으로, 후자를 자기결정권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육의 관점은 청소년에 대한 부권적(parternalistic) 입장을 기본으로, 청소년 주변의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강조하며, 사회에 의해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육의 관점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 성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판단과 선택 능력이 부족한 권리 보호의 객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자기결정의 관점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비교한다면, 양육의 관점은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자기결정의 관점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관점의 차이는 일응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관점은 그르며 어느 한 관점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양자 간의 조화로운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내용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변화에 따라 조속해져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간섭과 통제보다는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넓게 인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¹¹⁾¹²⁾

10) Walker, Brooks & Wrightsman(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앞의 책 19면에서 재인용.

11)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도 제12조에서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2)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Brassrd et al.은 "아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내면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키고 성인으로서 성공적 생

Ⅲ. 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해 더 이상 훈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권리주체로 인정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 정책, 사회운동 등 각 부문에서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권보장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은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의 부모와 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에게는 자신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인권을 행사할 줄 알며, 타인의 인권을 또한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와 교사, 지도자들에게는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인권교육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 의해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 주체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활에 필요한 과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동들은 이러한 기술을 성년에 이르러 갑자기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 있는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익히도록 하는 일은 명백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앞의 책, 287면에서 재인용.

나.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 참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¹³⁾.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청소년은 보호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학교 공간에서의 학생에 대한 인식은 피교육자로서 순응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존재를 축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2005. 6.)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표명(2005. 3.)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은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라 권리의 온전한 주체임을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 운동선수 폭력 실태조사, 실업계 고교생 현장 실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선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다. 청소년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을 사회 전반에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¹⁴⁾

나아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

13) 정부는 1998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청소년현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사회 각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는 의문이다.

14)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제4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CRC/C/15/Add.197 2003년 1월

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¹⁵⁾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아동인권전문가의 채용 및 아동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것이다.

IV. 맺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억압과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보호대상으로만 여겨온 우리 사회의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온전한 권리주체로 사회 내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인권을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오늘 자신의 삶의 주인이면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하고, 그들을 현재와 미래의 인권 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미래 우리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두서없는 짧은 강연을 마치고자 한다.

15) 위의 최종견해 제17항, 제18항

두발자유와 청소년인권

김진숙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I.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학교현실

“파마·염색, 무조건 5cm 단발! 싫으면 전학 가”

어느 학교 입학식때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10cm로 잘라두면 3년 동안 머리 한 번도 안 잘라도 돼”

또한 이 교사는 “지난해까지 15cm이던 두발규정이 완화돼 30cm로 늘었는데, 어깨에 닿으면 묶어야 한다”고 말하며, “규정이 30cm라고해서 30cm까지 기르지 말고, 지금 10cm로 잘라두면 3년 동안 머리 한 번도 안 잘라도 돼”라고 농담 섞인 권유를 하기도 했다.

‘30cm가 넘으면 무조건 5cm 단발’이라는 내용이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파마나 염색도 무조건 5cm 단발이야! 싫으면 전학가라”라고 엄포를 놓는다.

초등학교 때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기르던 머리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만 가면 무조건 잘라야한다.

귀밑 5cm, 반삭발, 장교머리등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생주임의 취향에 따라 짧게 잘라야한다. 심지어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어서 머리를 자르게 하거나 100명 150명의 두발을 한꺼번에 자르는 삭발식을 하기도 한다. 이해 안 되는 두발규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두발규제를 어겼을 경우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이어지는 인권침해이다. 폭언은 물론이거니와 체벌 그리고 강제이발이 동반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두발문제는 단지 두발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자존심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현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제식민지와 군사시절을 거치며 굳혀온 학교안의 권위적인 질서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학교 규율은 일제 식민지 체제 하에서 생겨났다. 미군정, 군사 독재정권을 거쳐 확고해 졌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큰 변화 없이 굳어졌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통제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질서만을 강조하는 구조가 바로 학교이다. 두발 규제는 이런 위계화 된 구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중·고생의 상징이 되어버린 교복,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용의복장검사, 매주 시행되는 애국조회 등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훈육’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집단화하고, 수직적 위계 구조에 복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 속에서 당연히 학생의 자율성이나 자치권은 인정되지 못했다.

‘두발규제’ 역시 일제가 만들어낸 잔재로서,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독재정권 속 군사문화로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아 현대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등 군사정권 아래 존재했던 ‘국민통제 정책’이 학교 안에서는 ‘두발단속’, ‘복장검사’란 이름만 바뀌어 지속되고 있고, 수직적인 교사와 학생관계도 변함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이 실종된 학교 현실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청소년도 마땅히 자신의 개성과 의사를堂堂하게 표현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쟁만을 앞세우는 입시만능주의, 성적지상주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채 ‘학생’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기성세대는 “대학을 가기위해선 공부해야한다”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을 언제나 통제받아야 할 ‘미숙아’로 여기며 학교가 정한 규율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신체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고2가 되면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세금도 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두발규제는 제도권 교육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학생다움과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로 ‘귀밑 3cm, 앞머리는 눈썹 위, 긴 머리는 반드시 묶는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조금이라고 벗어나면 반인권적 폭언과 폭력을 가차 없이 쏟아 붓는 것이 현실이다.

두발 규제는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인권위에서는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두발자유는 기본권, 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문제에도 자기선택권이 없는 존재이다. 학생도 학교의 주인 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없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드는 일까지 학생들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다. 어떤 식으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예를 들면 교육청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두드러진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처벌과 응징이 따르게 된다.

두발자유운동은 단순히 두발규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동에 놓인 학교에서 자신의 머리조차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자 자유의 갈망이었다.

II 현실에 저항하는 청소년

2000년 두발자유운동의 시작

앞머리 3cm, 귀밑 1cm

학생들의 주장은 ‘단지 머리를 몇cm이나 기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학생들이 느끼는 두발규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였다. 2000년, 더 이상 두발규제를 참을 수 없는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두발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두’를 중심으로 청소년 커뮤니티였던 ‘사이버 유스’와 ‘채널 텐’ 등이 두발자유 흐름을 주도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3달 만에 16만여 명이 두발자유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교실 칠판마다 두발제한폐지캠페인을 주도했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써서 친구들에게 알려나갔다. 오프라인에서는 청소년 조직인 중고등학생연합이 명동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주도했다. 중고등학생연합은 6개월 동안 20여 차례 이상의 캠페인을 가지며 두발자유를 외쳤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산발적인 학내투쟁과 학교의 징계도 이어졌다.

광화문을 뒤덮은 청소년들의 외침

2005년 5월 14일 광화문에 모인 청소년들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특히 ‘두발자유화를 위한 청소년행동의 날’에서 그 어떤 외침보다 처절하게 다가온 한마디는 “학생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다.

이 같은 학생들의 외침은 규제와 경쟁으로 가득한 ‘학교’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기 위한 하나의 ‘인간선언’이었다. 두발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두발에 대한 불평불만을 뛰어넘어 그들 스스로 자주적 인간으로 바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 ‘사회의 주인’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말일 뿐,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주인이라기보다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제3의 존재가 되어 왔던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의 표현이었다. 통제와 규율, 입시경쟁이 가득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자신 삶을 주체적으로 고민할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인간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온 사회에 외치는 것이다.

락카시위, 운동장시위, 종이비행기시위 이어지는 저항들

월요일 아침, 학교는 빨간색 락카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인권의 공동묘지 ㄷ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령대엔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스쿨 버스는 측면에 ‘두발 자유’가 큼직하게 쓰여진 채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았다.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좀 과

격한 방법을 비롯한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청소년들 생겨나고 있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1,2학년 1,000여명의 서명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두발규제의 문제점과 다른 학교의 사례 등을 조사해 각 반의 게시판에 붙이고 학부모 동의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 또한 일어났다. 어느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반대하여 종이비행기를 전교생이 날리기도 하고 운동장 집회를 기획하여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결해서 두발규제 반대를 외쳤던 학교도 있다. 아직은 산발적이지만 많은 학교에서 저항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거리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터져 나온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Ⅲ 현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법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5월 14일 이후 교육부 등 교육기관은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협의하라고 ‘살짝’ 꼬리를 내리기도 했었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학생두발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인권위원회에서 아무리 권고를 내리고 사회적인 여론이 떠들썩해도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협의라는 과정은 형식적으로 학생회 임원을 불러다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본 정도로 끝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두발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구성원의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안 따라주는 교육청이 문제이고 교육청은 또 각 학교의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변하지 않는 철옹성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과제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 제도적 대안이 필

요한 것이다. 권고나 여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학교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학생인권법을 발의하였는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학생의사반영 통로가 보장해야 한다.

전북 김제서고 한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대부분 친구들이 불만족할 정도로 형편없다. 이는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을 도교육청에 올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학생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학 처리되었다. 물론 이후 사회적 문제제기로 다시 복학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은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였던 오병현군에게 징계로 대답하는 학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교사회에서 학생들의 발언권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막혀있는 학생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한 문제는 학생회의 권한을 높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높이고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대표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그에 맞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설 때 그 효과가 가장 컸다. 스스로 동참하고 나설 때 지킬 수 있다. 진정한 두발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해야 한다. 소수의 두발 자유 주장이 아닌 청소년 모두의 주장이 될 때, 비로소 교사와 학부모 등 기성세대의 정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아직 두발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소년 모두가 행동하지 못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두발 운동은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다

청소년의 눈으로 두발자유화를 보자

최재규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잠실고 교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인권차원의 두발자유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유화를 이용한 탈선 즉, 방종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질주하는 평음의 청소년 오토바이 장발족도 그들만의 자유와 인권, 개성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교사가 짙은 화장에 요란한 무대의상을 입고 형클어진 빨간 핑크머리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정서상 자유와 인권 개성이라는 미명하에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두발자유화는 비록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학교와 사회, 단체생활에서 통념상 합의된 규정과 규범 등 최소한의 제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는 안 된다.

1. 청소년들의 동일시 현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는 동일시현상 즉, 모방성이 강하다. 인기 연예인이거나 만화 주인공의 무대용 헤어스타일을 동일시하려고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무분별한 모방은 개성이라는 이름보다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소위, 튀는 청소년(학생)들의 머리 형태는 염색, 펌, 샷컷, 백호머리, 노숙자머리, 삐죽머리, 젤무스 범벅머리, 장발, 펑크, 콩지머리는 물론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연예인 같이 머리를 매일 관리할 경제 능력이 없는 그들의 머리는 불결하다 못해 혐오감을 준다. 모방성이 강한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 정문을 나서 사복으로 바꿔 입고 거를 배회하면 성인과 구별하기 어렵다.

더욱 큰 문제는 두발자유화 이후 학생들의 여가문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학교와 길거리에서의 음주, 흡연 폭력은 늘고 성인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나이트클럽 등 기성세대 유흥장을 들락거리는 학생이 늘었다.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불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와 각종범죄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우성이다. 왜 학교에서 두발지도 해주지 않느냐고 전화통에 빗발치고 있다. 같은 학생들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동료학생머리를 신고하면서 선의의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 측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외국의 명문학교들에서는 머리 색깔이 인종이에 따라 다양하여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교육문화는 거의 대부분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 교칙이 엄격하다.

2. 두발지도의 맹점

초, 중등교육이 대학교육과 다른 점은 학생들의 교과지도 이외에 생활지도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중 두발지도는 대개 등교 시 교문에서 이뤄진다. 학생들 대부분은 두발규정을 잘 지킨다. 그러나 정작 지도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월담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등교한다. 심지어는 교문 지도교사가 출근하기 전 혹은 지도가 끝난 뒤 등교한다. 숨바꼭질은 계속되지만, 청소년 인권과 개성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도 모든 교사가 두발지도에 앞장 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에 의한 교원평가를 앞두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교사가 더 많다. 그나마 머리를 규제하는 몇몇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두발지도를 자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두발지도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의 머리를 가위로 강제로 자르거나 과격한 체벌을 통한 지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생활지도부장으로 재임 시 두발지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학동안 이용사 학원을 다니면서 이발 기능사 국가 면허를 취득하여 방과 후 장발 학생 중 희망자에게 무료 이발봉사를 했었다.

가장 바람직한 두발 지도방법으로는 지도대상학생과 레포(rapport)를 형성한 가운데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생 스스로가 개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3. 청소년의 두발은 제한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머리형태는 학교특성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체육학교는 짧은 머리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 반면 예술학교는 교과특성상 머리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또한 철도학교나 종교학교, 기술학교, 해양고등학교 등 학교전통과 교칙에 따라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도 분명 있다.

사실 평범한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약 86%의 학생들은 완전자유화 보다는 완화된 두발규정, 즉 어느 정도 최소한의 두발규정은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계 학교도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일방적인 권리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종에 가까운 완전 자유화보다는 합리적인 두발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4. 두발자유화 법제화는 모순이다.

완전 두발자유화를 위해서 “학생인권법”으로까지 법제화 하겠다는 모순은 선택의 폭이 제한된 또 다른 구속일 수밖에 없다. 학교특성 또는 학부모, 지역사회, 일반학생들의 다양한 논의를 외면한 모순이다. 두발자유화의 보물은 또 다른 자유화

로 교복자유화, 학교출입 자유화, 수업거부 등의 주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생들의 등하교 자유화도 요구 될 수 있다.

중등학교교육은 청소년을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람으로 대학교육과 달리 생활지도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발 전면 자유화 문제는 단위학교별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최종 학교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학생, 관리자)의 심의 의결로 합의된 두발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엄격히 지키는 책임감과 준법정신도 배워야 한다.

5. 맺는말

그동안 학교의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두발규정과 비민주적인 지도방법이 두발자유화를 부추겼다면, 학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두발규정과 지도방법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두발규정이 일률 편향적 통제적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선진교육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로 또는 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두발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통념상 합의된 규정과 규범, 교칙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진정한 두발자유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부르짖는 무조건적인 완전 두발자유화와 법제화는 비교육적인 극단적 해결 방법으로 청소년 두발문제 만큼은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 의한 자율적인 두발 제한규정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교육개방을 앞두고 선진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한국형 “단정한 청소년 두발규정”을 선보여야 할 때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길 희망한다.

두발제한의 대안 모색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전공 교수)

1. 청소년들의 두발 문제와 관련한 주체들과 그 주장

우리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두발 문제와 관련한 주체들은 가정, 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 활동, 인권 등에 관심 있는 기관들일 것이다. 크게 보면 4영역의 주체들로 분류 가능하며, 모두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두발 문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어느 일방의 견해만을 갖지 않는다는데 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입장은 청소년들의 두발 자유화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그리고 청소년들과 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찬성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모를 비롯한 교사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나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도 찬·반의 입장이 분할되고 있다. 즉,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 등에 따라 철저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청소년 대 기성세대의 대결구도로 단순화시켜 바라다보는 이유는 단지, 두발자유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보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두발 문제와 관련한 주체들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두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위치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어 어려운 문제이다. 즉, 가치중립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두발문제에 대한

찬·반 주장의 근거들을 찾아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서 문제 해결의 대안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두발제한의 근거들로서 청소년보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을 대변하는 흔적은 다음 두 개의 주장으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권위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시각이다. 보다 자세히 풀이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간섭주의”로, 이 주장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 교사 혹은 후견인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일방의 통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유이다(G.Dworkin, 1972). 일반적으로 훈육권과 양육권으로 표현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성인들에 의해 청소년들의 생활이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된다. 두발문제 역시 이에 해당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두발문제를 문제·비행과 연관시켜 보려는 우려의 시각이다. 즉, 이 문제는 가정에서 부모의 통제나 학교교칙을 통해 청소년들의 외모(두발, 복장 등)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가 유해환경·물질 등의 접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청소년들도 긍정하고 있으나, 성인들이 더욱 커다란 긍정을 보인다.¹⁶⁾

한편, 두발자유화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논리적 근거로는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주체들로 두발 및 복장의 자유, 그리고 매체를 통한 의견 표현의 자유 등이 있으며, 주로 자유권적 입장에서 주장한다(정희욱·길은배·김정래, 1999). 이에 찬성하는 일부 성인들 역시 “두발문제로 표현되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적 권리의 보장은 청소년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권보장의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논리로 이의 정당화를 지원 한다(성정숙, 1999).

또한, 위의 문제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효능이 두발자유화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외모(두발, 복장, 악세사리 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나 외향적 표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다(한준상 외, 2000).

16) 2000년 한준상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긍정율은 30% 정도이고, 성인들은 70% 정도로 나타났다(한준상 외, 2000).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두발문제에 관한 찬·반의 입장은 모두가 감성보다는 철저히 이성적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단, 청소년들은 두발자유화의 논리적 근거가 주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천부적으로 부여 되는 자연법적 입장에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의 문제로 보고 있고, 기성세대는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전 발달이라는 명제를 더하여 권리 제한의 논리를 확대하고 있다.

2. 두발 제한의 영역과 장면들

청소년 두발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논쟁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먼저, 두발제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두발과 관련한 행위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앞·뒤머리 길이와 헤어스타일의 문제로 집약된다.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머리길이를 포함하여 머리핀(헤어밴드 포함) 사용 유·무 및 디자인·색깔 문제, 머리묶기 등이다. 그리고 남녀 청소년 공통으로 염색이나 코팅 가능 여부를 비롯하여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문제가 있다.

이러한 두발제한의 내용들은 학령기를 비롯하여 지역적, 학교 계열적 특성에 따라 허용여부가 천차만별이다. 즉, 각급 교육지자체를 비롯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위에서 열거한 외모(두발문제) 관련 규제 내용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머리길이 제한(64.4%), 머리핀 제한(56.5%), 여학생의 머리묶기 제한(53.9%), 무스·스프레이·젤 사용 제한(45.5%) 등이다(한준상 외, 2000). 이 중에서 무스 및 스프레이나 젤 등의 제한이 낮다고 응답한 것은 청소년들의 바쁜 등교 시간 속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어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 두발의 자유권이 없다”에 ‘그렇다’ 26.2%, ‘보통이

다’ 27.6%, ‘그렇지 않다’ 46.2%로 비교적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학교에서 두발을 자주 규제한다”에 ‘그렇다’가 62.4%, ‘보통이다’ 22.5%, ‘그렇지 않다’ 15.1%로 나타나 가정보다는 학교에서의 두발제한이 매우 강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은배 외, 2005). 청소년들의 두발자유권이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영역에서 두발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하여 부모가 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심리적 상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두발 규제에 대하여 과반 수 이상이 불만을 갖고 있고, 가정보다는 학교 영역에서 그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와 관련한 해결 지점은 학교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발제한의 방식에 관한 행위를 보면,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요구가 단순히 머리길이와 관련한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⁷⁾

머리가 길면 어떤 선생님은 기계로 막 밀어놔요. 그러면 미장원에서 다시 예쁘게 손질할 수도 없어요.

가위로 앞머리를 쥐 뜯어 먹은 것처럼 막 잘라요. 경고만 주고 다음날 확인하면 좋을텐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은 외부 미용사를 불러다 머리를 짜르기도 해요...

즉, 두발제한의 문제는 머리길이 등과 관련한 논쟁에 더하여 학교 현장에서 두발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를 단순히, 머리길이에 대한 논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발자유화로 상징되는 내용 속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존재한다.

17) 아래에 제시한 심층면접 내용은 “이동연·길은배 외(2006). 안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미발간보고서” 중에서 안산시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임.

3. 두발제한의 대안 모색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 두발제한의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교칙에 나타난 두발제한의 내용 및 적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의식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학령기, 지역, 학교 계열, 성별에 따른 규제의 내용과 그 수준을 알 수 없다. 특히, 청소년 계층 내부에서도 두발제한의 내용에 따라 긍·부정적 반응이 있고, 부모 및 교사들의 경우에도 청소년과 동일한 찬·반의 분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모 표현으로 상징되는 두발문제가 청소년들의 건전 성장을 비롯한 자아상 확립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두발자유화의 반대 논리 중에 하나는 두발자유화가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을 높게 하여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이다. 반대로 두발자유화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상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이 연구가 제대로 실행되어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에 찬·반의 태도를 갖는 어느 한쪽은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사회차원), 청소년들이 두발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제도권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두발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제도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은 주로 기성세대가 확보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공식적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주장할 뿐이며 혹, 관심 있는 기성세대와 몇몇 기관만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여 이제는 이들의 주장을 공식화·제도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속에

서 청소년-성인이 대등한 관계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학교차원), 각급 학교단위에서 청소년들의 두발관련 지침을 제정할 때 교사-학부모-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수립·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이 제도는 일부 학교가 운영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문제는 관련 위원회의 3주체 구성 인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어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이다. 동위원회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순히 장식 또는 동원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목소리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다섯째,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두발제한 방식이 임의적 방법에서 공식적 방법으로 전환, 확립되어야 한다. 두발제한의 지침이 규범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실행방법이 권위를 갖고 있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적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즉, 학교교칙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임의적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두발규제에 대한 교사의 제재 방식을 합리적·제도적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제재 행동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는 두발규제의 내용만이 규정화되어 있다.

여섯째, 다섯 번째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급 학교는 두발문제에 관한 지침 수립 시 적용(제재)의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두발규제관련 지침을 위반했을 때, 현장에서 교사가 바로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두발문제는 형법상의 형벌형량 적용과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닌 사안임을 고려하여 '경고-확인-처분'이라는 적용의 세분화 단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두발제한의 내용과 수준에 따른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이 대안은 보다 넓은 의미의 두발자유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두발제한의 내용 중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가능해 보이는 무스·젤 등의 완전한 허용, 그리고 머리핀 등의 사용 범위 확대 등과 같이 가벼운 사안부터 특정 학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와 관련한 쟁점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의 의식이 존재한다. 또한, 대안 모색의 지점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집행할 때, 그 법의 '실정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한다. 즉, 두발제한의 논리 또는 지침을 만들었을 때, 이의 실행(준수)을 청소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의 타당성'과 청소년들이 두발제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지침의 실효성'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두발제한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사회 속에서 실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요구 또는 강요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기성세대-청소년 간의 절차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정숙(1999). 학교에서의 아동권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61-62.
- 이동연·길은배 외(2006). 안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미발간보고서.
- 정희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준상 외(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Dworkin. G.(1972). Paternalism,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7, 64~84.

지정토론 1

왜 인권교육 필요성
 명문
 책임
 필요 최소한? 강요 보충?

청소 기본권으로서의 두발자유
 좋은 약은 ~~나쁜 약도~~ ~~있는~~ ~~수~~ ~~있~~ ~~다~~
 다른 약도 있는 수 있다
 대안성 X
 유윤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두발자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지 벌써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이란 단어와 '인권'이란 단어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현실이라 청소년인권운동은 조금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인권'이란 말이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었고, '두발자유'가 인권이고, 기본권이란 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맹신하거나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두발자유가 기본권이라는 결정이 담고 있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꽤나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그 요건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우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목적정당성), 그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하며(방법적정성), 기본권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피해최소성), 기본권의 제한이 만드는 이익과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비교하여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법익균형성). 따라서 두발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싶다면, 두발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절성 등 이런저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발자유가 기본권이란 것은,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쪽이 왜 두발자유를 해야 하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두발규제를 주장하는 쪽이 왜 두발규제를 해야 하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두발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위의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썩 훌륭한 증명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발규제의 효과가 무엇이고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발규제를 통해 두발자유라는 기본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증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교사들은 두발자유가 되거나 두발규제가 완화되면 학생들 통제가 힘들어지고 학교가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비록 증명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에 더욱 두발자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학교 분위기는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질서에 강박적입니다. 학생도 인격체이며 교육의 주체임을 생각할 때 두발규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과연 정당할까요? 설령 그 목적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한다는 것은 방법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요? 학생들의 개성발현권을 억압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정도로 두발규제의 효과가 큰가요? 두발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억지 쓰기를 그만두고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권리
인간

두발규제가 있어야 하나?

필수

전에 교육부관계자들과 면담을 할 때 한 분이 "학생이 염색까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인식을 학생들 자신도 많이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발자유가 기본권이라는 것은 길이 뿐 아니라 염색, 파마까지 포함한 두발규제 자체가 증명되지 못하는 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두발완화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싫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서 몇 cm만 늘리잔 거죠. 이를 바꿔 말해볼까요? "나는 이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니 너희 나머지들도 이정도에서 타협을 보자." 이것은 다분히 이기적인 자신의 기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 이전의 규제가 짧은 스포츠형 머리였을 경우 그러한 머리 형태에 동의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는 만족하니 완화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논리입니다. 학생들이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이렇게 두발규정을 바꿨을 때, 그 학교에는 분명 그보다 더 자유스러운 두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즉, 합의를 통한 완화란 이야기는 상당히 전체주의적입니다. 두발자유는 개인에게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회를 통해서 두발규제를 정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

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9년~2000년의 '두발제한반대운동'은, 학교 안의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소통 구조가 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발규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했습니다. 분명히, 학교 안에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한쪽은 다른 한쪽의 머리를 자르고, 엉덩이를 때릴 수 있는 등 기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등 권력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과정이 있기 전에는 소통 구조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여러 직접 행동들은 많은 의의를 지닙니다. 학교와 사회에 저항하고 그들이 행하는 인권침해를 거부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세력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생성 있는 사람

못난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

투쟁
권리
진

문화권

실정에 따라 복원

법리율 다른 대책

상상력의 빈곤

정서 최소한의 규제 차이

인권교육 X
인간성 X

성인 → 제도권 세력?

혁신

혼나르 권리가 없다.

사회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 혁 (2006청소년특별회의, 전남/ 순천대 2년)

저는 전남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혁입니다. 앞으로 교사가 될 예 비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교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발자유화는 조금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두발을 단속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과 학교간의 합의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때는 두발규제가 심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길면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2학년때는 학생회에서 열심히 선생님과 규제완화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 두발 자유화가 받아들여졌는데요 머리의 길이는 귀를 넘지 않게 기를 수 있고 염색도 갈색계통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실정에 맞는 두발자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규제하는 의무와 규범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듯 학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할 권리도 있지만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두발자유화를 실시한다면 분명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어긋나는 학생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색 빨간색 등形形色색한 머리를 물들이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학생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아직은 학생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두발을 자유롭게 하고 다녀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 두발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의 사회의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인식을 바뀌어 나가면서 사회가 허용하는 모습 안에서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 정책과제 현황조사

최영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사개요

참 고 자 료



- 조사목적 : 2006 청소년자원망의 정책과제에 관한 현황조사
- 조사대상 :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 조사방법
 - 설계방법 :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표본을 표본수 : 16개 시도 중 9개 시도 청소년 1,000명 이상 임의추출
 - 총회기율 : 74.6% (사외) 표본 : 1,196명
- 조사방법 : 자기보고 (학생자주 응답) 설문지형 설문조사
- 조분추출결과
 - 학생의 성별 : 1,196명 (남학생 61.2%, 여학생 38.8%)
 - 학년 : 중학생 34.2%, 고등학생 65.8%
 - 거주지 : 대도시 42.1%, 중소도시 31.2%, 읍·면·농촌 26.7%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정책과제 현황조사

최 창 옥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조사개요

- 조사목적: 2006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파악
- 모집단: 전국의 중·고·대학생 청소년
- 표본설계
 - 설계방법 : 층화단순임의추출법
 - 표본틀·표본수 : 16개 시·도 중·고·대학생 청소년 최소 80명 이상 임의추출
 - 층화기준 : 지역(16개 시·도), 교급, 성별
- 조사방법 : 지역별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
- 표본추출결과
 - 회수된 설문지 1,892부,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1,839부
 - 성 별 : 남성 50.2%, 여성 49.8%
 - 교 급 : 중학생 34.2%, 고등학생 51.7%, 대학생 14.1%
 - 거주지 : 대도시 42.4%, 중·소도시 37.4%, 시·군의 읍·면 20.2%

【 조사결과 요약 】

□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 중요도

- 2006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전 부문에 걸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위기(가능)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 장애 청소년 편의시설 마련 등의 복지부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더욱 크게 중요하다고 인식함.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시·군의 읍·면 청소년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대학생,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조성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시·군의 읍·면 청소년 보다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함.
- 교육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함.

□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문별 세부정책과제 중요도

- 교육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 교육부문 정책과제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는 세부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환경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과제의 중요도
 - 환경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있어 청소년들은 세부정책과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위기(가능)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 시급성

- 청소년들은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부문을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인식.
 - 구체적으로 교육(23.8%), 사회안전망 구축(22.6%), 복지(21.1%), 환경조성(21.0%), 사회문화(11.5%)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청소년의 경우 5개 부문 중 사회안전망 구축부문(23.4%)을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교육부문(26.7%)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생은 사회안전망 구축(24.0%, 24.7%)이 우선과제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교육부문(37.6%)이 우선과제로 나타남.
-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교육 부문(23.8%, 26.2%)을 우선과제로 제안하였고, 시·군의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안전망 구축(24.4%)의 조속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남.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정도

- 2006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제시된 7가지 정책과제 평균점수 모두 이론적 평균인 3점 이하로 나타나,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성별, 교급별, 지역별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중학생, 시·군의 읍·면 거주 청소년이 정부의 노력을 높게 인식함.
- 정부와 사회의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우 소극적이거나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살펴보면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49.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출 등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6.9%, 농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 44.7%로 낮게 나타남**.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빈곤지역의 교육·의료·문화환경 개선, 장애청소년 지원,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는 남자청소년, 중학생, 읍·면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 **유기, 방임, 학대, 부모 가출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정도는 여자청소년, 중학생, 시·군의 읍·면 거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중학생, 읍·면 거주 청소년이 높게 인식**.

① 표본집단

사회지원망 구축 관련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중·고·대학생 청소년으로 그 중 지역, 교급, 성별을 고려하여 총 1,839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923(50.2%)명, 여자 청소년은 916(49.8%)명으로 성별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935명(51.7%)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17명(34.2%), 대학생 255명(14.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대도시(750명)와 중·소도시(661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군의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358명이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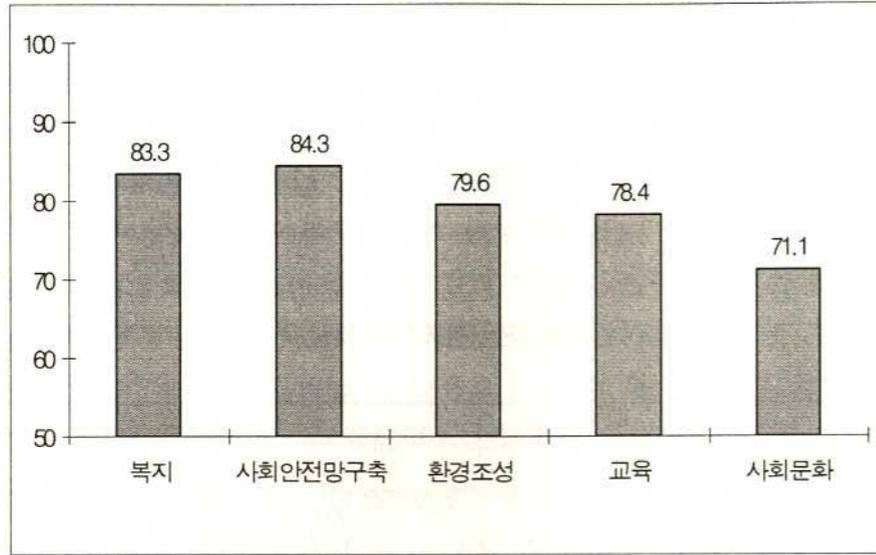
(단위 : 명, %)

변수명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구분		
성별	남자	923	50.2
	여자	916	49.8
	합계	1,839	100.0
교급	중학생	617	34.2
	고등학생	935	51.7
	대학생	255	14.1
	합계	1,804	100.0
거주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750	42.4
	중·소도시	661	37.4
	시·군의 읍·면	358	20.2
	합계	1,769	100.0

②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의 중요도

2006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인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에 대하여 응답한 청소년들은 5개의 전 부문에 걸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기(가능)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84.3%)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장애청소년 편의시설 마련 등의 복지부문(83.3%)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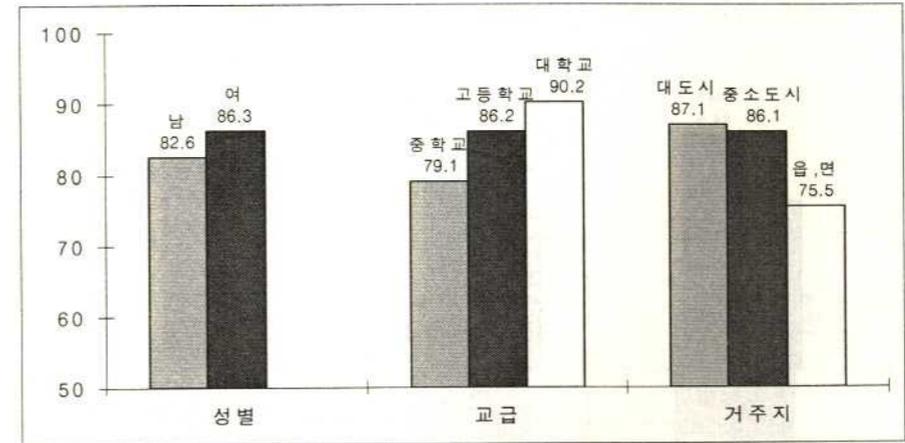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책과제의 부문별 중요도(%)

<표 2> 정책과제 분야별 중요도

정책과제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지부문	888 (49.4)	609 (33.9)	236 (13.1)	37 (2.1)	28 (1.6)	1,798 (100.0)	4.27	0.89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	775 (43.0)	745 (41.3)	207 (11.5)	43 (2.4)	32 (1.8)	1,802 (100.0)	4.21	0.87
환경조성부문	828 (46.0)	605 (33.6)	287 (15.9)	38 (2.1)	43 (2.4)	1,801 (100.0)	4.18	0.95
교육부문	810 (45.0)	601 (33.4)	306 (17.0)	48 (2.7)	35 (1.9)	1,800 (100.0)	4.16	0.94
사회문화부문	578 (32.1)	702 (39.0)	414 (23.0)	66 (3.7)	38 (2.1)	1,798 (100.0)	3.95	0.94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86.3%)이 남자청소년(82.6%)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90.2%),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86.1%)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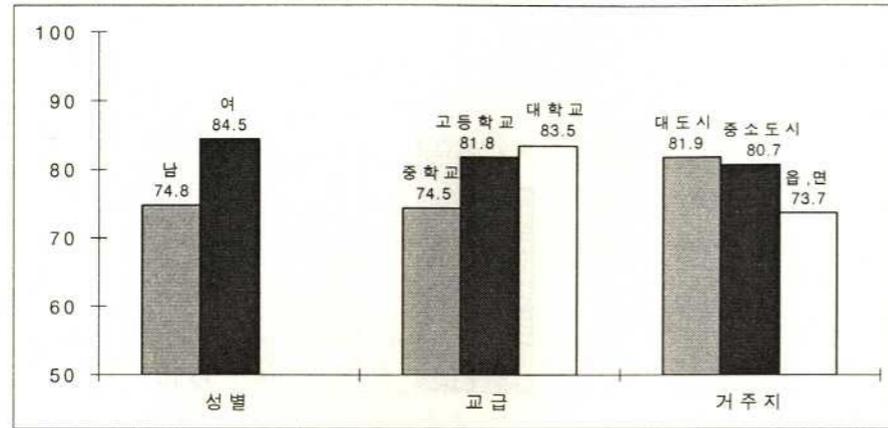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의 중요도(%)

<표 3>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의 중요도 교차분석

구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χ^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63 (40.0)	386 (42.6)	112 (12.3)	29 (3.2)	17 (1.9)	907 (100.0)	10.870* (df=4)	
	여자	410 (46.1)	358 (40.2)	93 (10.4)	14 (1.6)	15 (1.7)	890 (100.0)		
교급	중학생	205 (33.2)	283 (45.9)	92 (14.9)	23 (3.7)	14 (2.3)	617 (100.0)	77.778*** (df=8)	
	고등학생	428 (46.0)	374 (40.2)	105 (11.3)	17 (1.8)	6 (0.6)	930 (100.0)		
	대학생	142 (55.7)	88 (34.5)	10 (3.9)	3 (1.2)	12 (4.7)	255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324 (43.9)	319 (43.2)	77 (10.4)	8 (1.1)	10 (1.4)	738 (100.0)	49.111*** (df=8)	
	중·소도시	301 (46.7)	254 (39.4)	69 (10.7)	14 (2.2)	6 (0.9)	644 (100.0)		
	시·군의 읍·면	119 (33.9)	146 (41.6)	52 (14.8)	20 (5.7)	14 (4.0)	351 (100.0)		

* p<.05 ***p<.001

환경조성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84.5%)이 남자청소년(74.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83.5%),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81.9%)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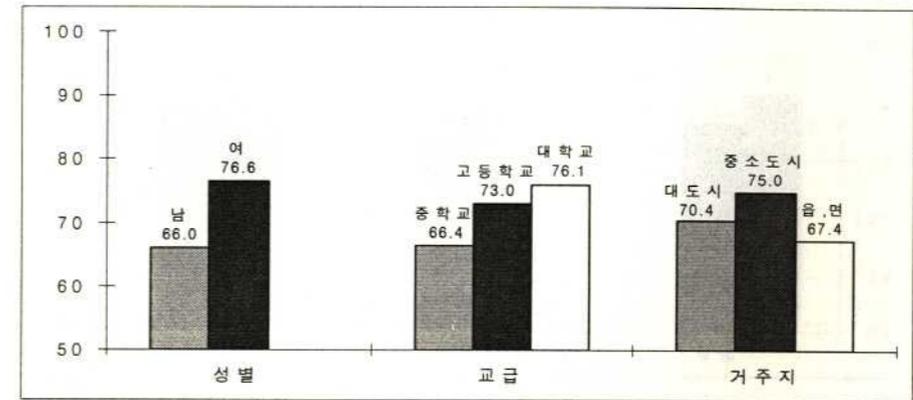
[그림 3] 환경조성 부문의 중요도(%)

〈표 4〉 환경조성 부문의 중요도 교차분석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 않음	합계	χ^2
성별	남자	363 (40.1)	314 (34.7)	175 (19.3)	26 (2.9)	28 (3.1)	906 (100.0)	35.800*** (df=4)
	여자	461 (51.8)	291 (32.7)	111 (12.5)	12 (1.3)	15 (1.7)	890 (100.0)	
교급	중학생	245 (39.8)	214 (34.7)	116 (18.8)	18 (2.9)	23 (3.7)	616 (100.0)	32.651*** (df=8)
	고등학생	449 (48.3)	312 (33.5)	144 (15.5)	14 (1.5)	11 (1.2)	930 (100.0)	
	대학생	134 (52.5)	79 (31.0)	27 (10.6)	6 (2.4)	9 (3.5)	255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354 (48.0)	250 (33.9)	117 (15.9)	7 (0.9)	9 (1.2)	737 (100.0)	57.230*** (df=8)
	중·소도시	310 (48.1)	210 (32.6)	102 (15.8)	15 (2.3)	7 (1.1)	644 (100.0)	
	시·군의 읍·면	136 (38.7)	123 (35.0)	54 (15.4)	13 (3.7)	25 (7.1)	351 (100.0)	

***p<.001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76.6%)이 남자청소년(6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66.4%)보다는 고등학생(73.0%), 대학생(76.1%)이 더욱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의 읍·면 청소년(67.4%) 보다는 중·소도시(75.0%), 대도시(70.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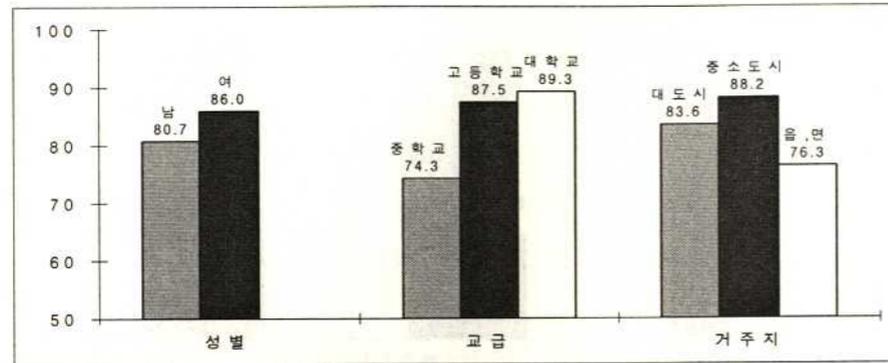
[그림 4]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

〈표 5〉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 교차분석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 않음	합계	χ^2
성별	남자	292 (32.3)	305 (33.7)	245 (27.1)	42 (4.6)	21 (2.3)	906 (100.0)	32.137*** (df=4)
	여자	283 (31.9)	397 (44.7)	167 (18.8)	24 (2.7)	17 (1.9)	890 (100.0)	
교급	중학생	158 (25.7)	250 (40.7)	158 (25.7)	28 (4.6)	21 (3.4)	615 (100.0)	34.579*** (df=8)
	고등학생	326 (35.1)	352 (37.9)	210 (22.6)	32 (3.4)	8 (0.9)	928 (100.0)	
	대학생	94 (36.9)	100 (39.2)	46 (18.0)	6 (2.4)	9 (3.5)	255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215 (29.2)	304 (41.2)	185 (25.1)	23 (3.1)	10 (1.4)	737 (100.0)	30.615*** (df=8)
	중·소도시	227 (35.3)	255 (39.7)	131 (20.4)	21 (3.3)	9 (1.4)	643 (100.0)	
	시·군의 읍·면	115 (33.0)	120 (34.4)	78 (22.3)	19 (5.4)	17 (4.9)	349 (100.0)	

***p<.001

복지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86.0%)이 남자청소년(8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74.3%)보다는 고등학생(87.5%), 대학생(89.3%)이 더욱 크게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88.2%), 대도시(83.6%)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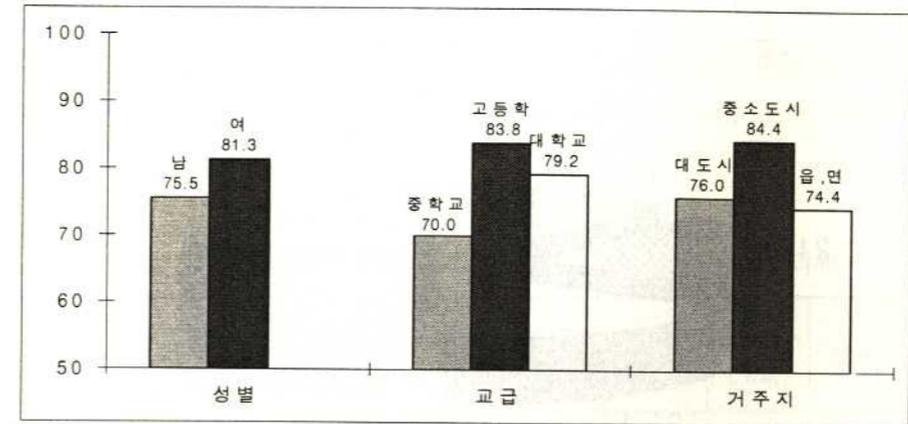
[그림 5] 복지 부문의 중요도(%)

<표 6> 복지 부문의 중요도 교차분석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 않음	합계	χ^2
성별	남자	빈도 (49.2)	284 (31.5)	138 (15.3)	22 (2.4)	15 (1.7)	903 (100.0)	11.168* (df=4)
	여자	빈도 (49.6)	324 (36.4)	97 (10.9)	15 (1.7)	13 (1.5)	890 (100.0)	
교급	중학생	빈도 (40.4)	209 (33.9)	121 (19.6)	24 (3.9)	13 (2.1)	616 (100.0)	87.259*** (df=8)
	고등학생	빈도 (54.3)	308 (33.2)	100 (10.8)	12 (1.3)	4 (0.4)	928 (100.0)	
	대학생	빈도 (53.1)	92 (36.2)	15 (5.9)	1 (0.4)	11 (4.3)	254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빈도 (48.4)	260 (35.2)	106 (14.4)	8 (1.1)	7 (0.9)	738 (100.0)	56.345*** (df=8)
	중·소도시	빈도 (55.5)	210 (32.7)	67 (10.4)	5 (0.8)	7 (1.1)	642 (100.0)	
	시·군의 읍, 면	빈도 (43.3)	115 (33.0)	51 (14.6)	19 (5.4)	13 (3.7)	349 (100.0)	

* p<.05 ***p<.001

교육 부문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81.3%)이 남자청소년(7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83.8%)이 더욱 크게 사회문화 부문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84.4%)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교육 부문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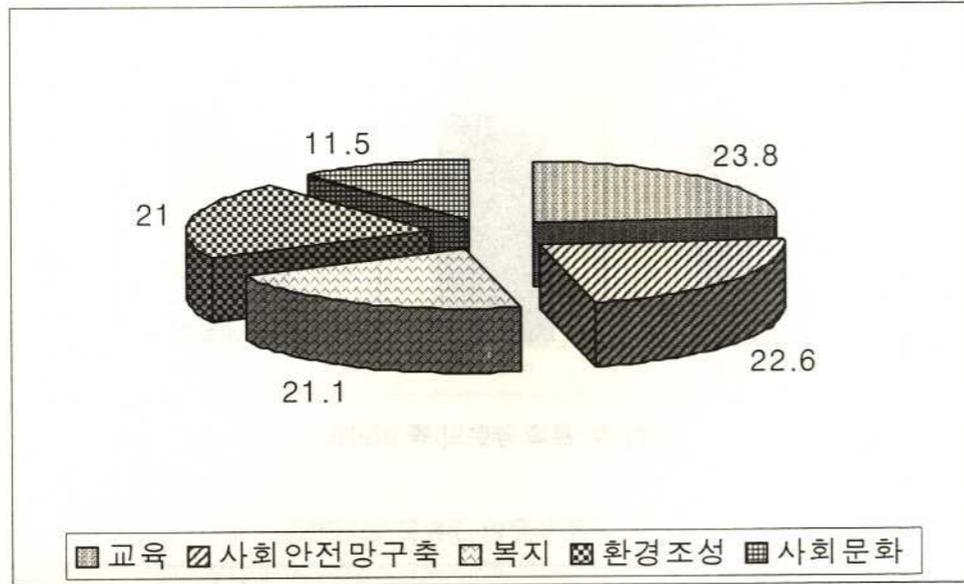
<표 7> 교육 부문의 중요도 교차분석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 않음	합계	χ^2
성별	남자	빈도 (44.4)	282 (31.1)	172 (19.0)	33 (3.6)	17 (1.9)	906 (100.0)	13.394* (df=4)
	여자	빈도 (45.6)	317 (35.7)	134 (15.1)	15 (1.7)	18 (2.0)	889 (100.0)	
교급	중학생	빈도 (36.9)	204(33.1)	140 (22.7)	28 (4.5)	17 (2.8)	616 (100.0)	55.474** (df=8)
	고등학생	빈도 (50.2)	312 (33.6)	127 (13.7)	15 (1.6)	9 (1.0)	929 (100.0)	
	대학생	빈도 (45.9)	85 (33.3)	39 (15.3)	5 (2.0)	9 (3.5)	255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빈도 (42.3)	249 (33.7)	150 (20.3)	19 (2.6)	8(1.1)	738 (100.0)	49.312** (df=8)
	중·소도시	빈도 (50.9)	215 (33.5)	87 (13.6)	7 (1.1)	6 (0.9)	642 (100.0)	
	시·군의 읍, 면	빈도 (41.6)	115 (32.8)	58 (16.5)	15 (4.3)	17 (4.8)	351 (100.0)	

* p<.05 ***p<.001

③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로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의 교육 부문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안전망 구축 22.6%, 복지 21.1%, 환경조성 21.0%, 사회문화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

<표 8>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 분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순위
교육 부문	405	23.8	1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	385	22.6	2
복지 부문	359	21.1	3
환경조성 부문	357	21.0	4
사회문화 부문	196	11.5	5

정부의 조속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성별, 교급,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부문을 우선 선결과제로 청소년들은 제안하였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5개 부문 중 사회안전망 구축부문(23.4%)을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교육부문(26.7%)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24.0%, 24.7%)을 우선과제로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는 교육부문(37.6%)이 우선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교육 부문(23.8%, 26.2%)을 우선과제로 제안하였고, 시·군의 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안전망 구축(24.4%)의 조속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 변인별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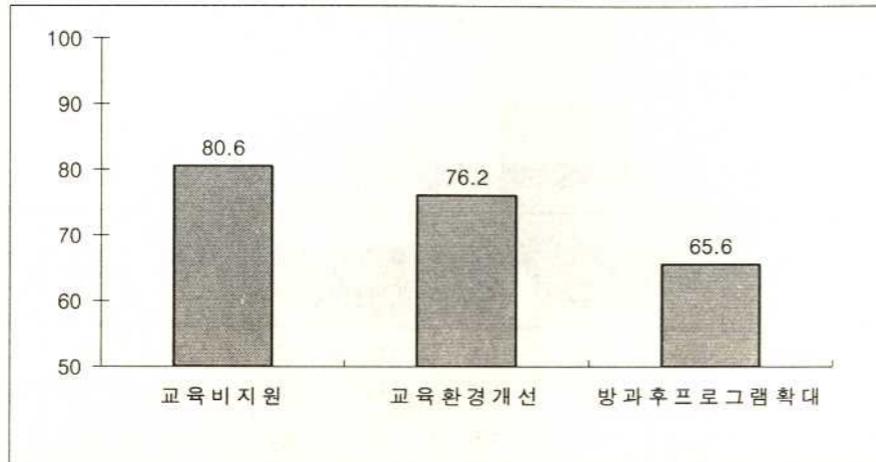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	사회 안전망 구축 부문	환경조성 부문	사회문화 부문	복지 부문	교육 부문	합계	χ^2
성별	남 자	빈도 (백분율)	192 (23.4)	160 (19.5)	116 (14.1)	181 (22.0)	172 (21.1)	821 (100.0)	18.137** (df=4)	
	여 자	빈도 (백분율)	180 (21.4)	189 (22.6)	75 (9.0)	168 (20.2)	224 (26.7)	836 (100.0)		
교급	중학생	빈도 (백분율)	137 (24.0)	101 (17.7)	86 (15.1)	131 (23.0)	115 (20.2)	570 (100.0)	59.678*** (df=8)	
	고등학생	빈도 (백분율)	210 (24.7)	192 (22.6)	92 (10.8)	165 (19.4)	191 (22.5)	850 (100.0)		
	대 학 생	빈도 (백분율)	28 (11.6)	56 (23.1)	13 (5.4)	54 (22.3)	91 (37.6)	242 (100.0)		
거주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빈도 (백분율)	138 (19.9)	149 (21.5)	80 (11.6)	160 (23.1)	165 (23.8)	692 (100.0)	9.868 (df=8)	
	중·소도시	빈도 (백분율)	147 (24.7)	116 (19.5)	67 (11.3)	109 (18.3)	156 (26.2)	595 (100.0)		
	시·군의 읍·면	빈도 (백분율)	78 (24.4)	67 (20.9)	38 (11.9)	72 (22.5)	65 (20.3)	320 (100.0)		

** p<.01 ***p<.001

4 정책과제의 중요도

4.1. 교육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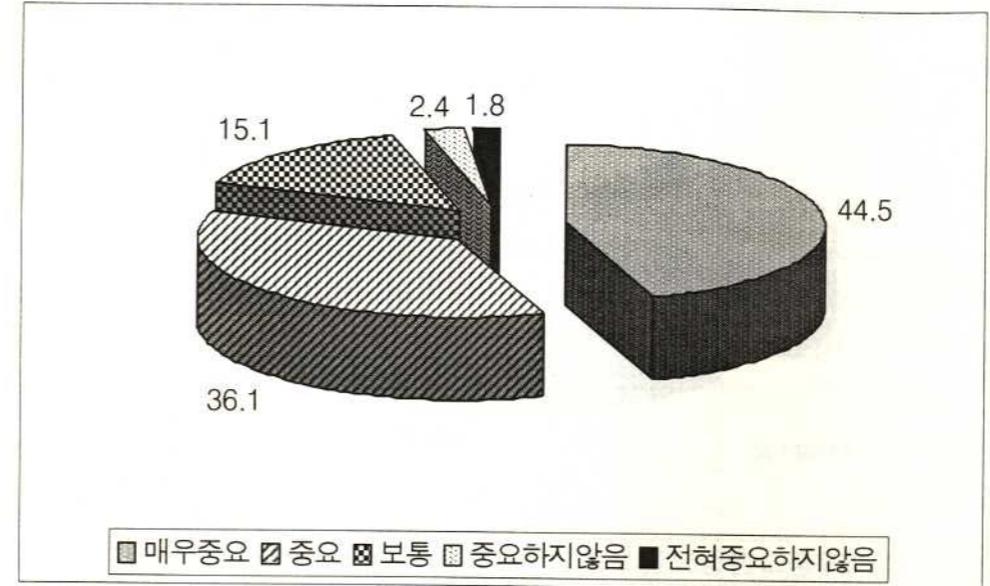
교육부문 정책과제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80.6%)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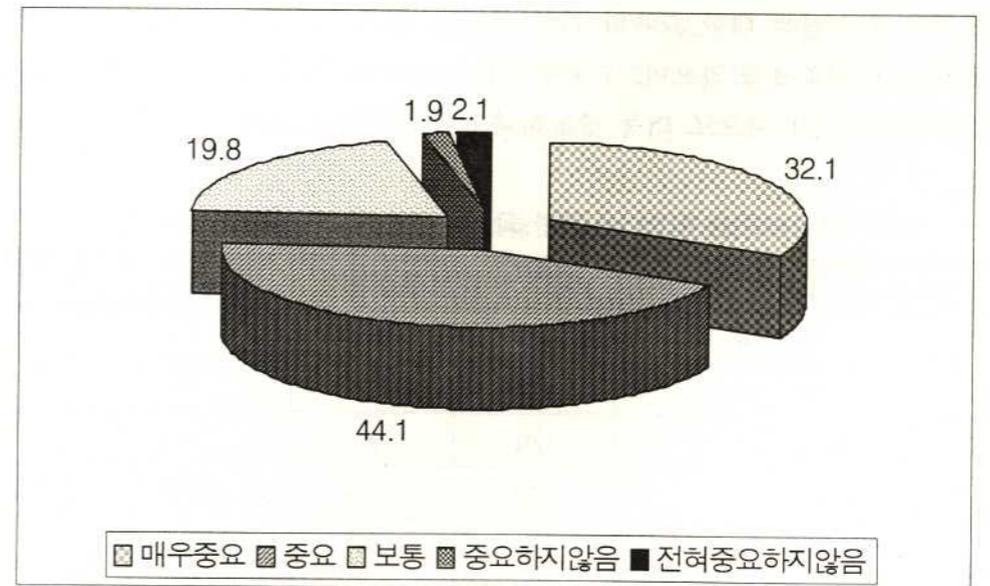
[그림 8] 교육 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표 10> 교육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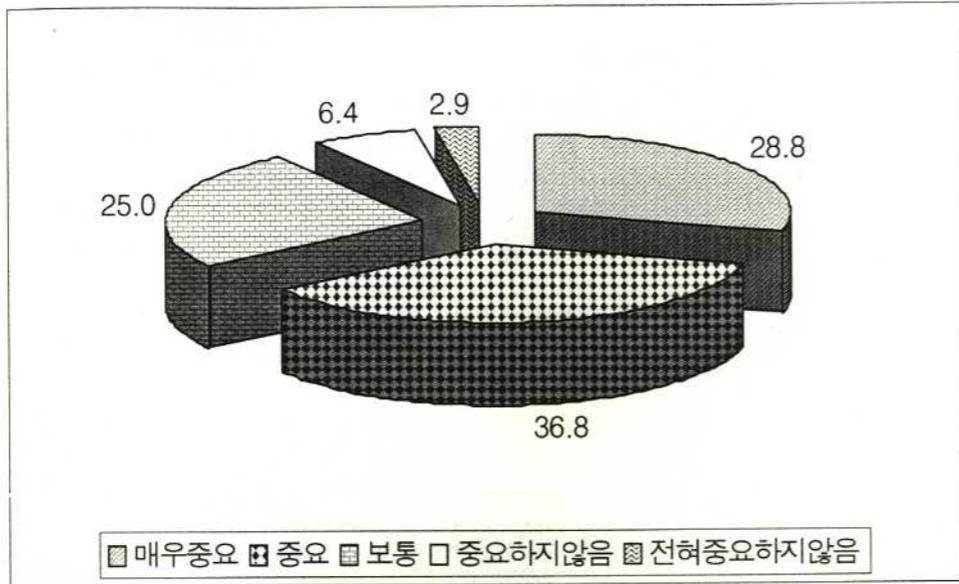
정책과제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801 (44.5)	650 (36.1)	272 (15.1)	44 (2.4)	33 (1.8)	1,800 (100.0)	4.18	.92
저소득 지역,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578 (32.1)	793 (44.1)	357 (19.8)	35 (1.9)	37 (2.1)	1,800 (100.0)	4.02	.88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519 (28.8)	663 (36.8)	451 (25.0)	115 (6.4)	53 (2.9)	1,800 (100.0)	3.82	1.01



[그림 9]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의 중요도



[그림 10] 저소득 지역,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도



[그림 11]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는 여자 청소년(M=4.24)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34), 또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30)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4.14	.965	-2.429*	
	여자	4.24	.851		
교급	1) 중학생	3.91	.977	48.401***	1<2 1<3
	2) 고등학생	4.34	.798		
	3) 대학생	4.32	.947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20	.869	13.670***	3<1, 2 1<2
	2) 중·소도시	4.30	.820		
	3) 시·군의 읍·면	3.99	1.061		

* p<.05, ***p<.001

저소득 및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M=4.07)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생(M=4.21),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15)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저소득·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3.98	.940	-2.227*	
	여자	4.07	.820		
교급	1) 중학생	3.83	.948	24.146***	1<2 1<3
	2) 고등학생	4.10	.813		
	3) 대학생	4.21	.897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99	.833	15.296***	3<1, 2 1<2
	2) 중·소도시	4.15	.797		
	3) 시·군의 읍·면	3.85	1.067		

* p<.05, ***p<.001

방과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M=3.86)의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생(M=3.9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3.90)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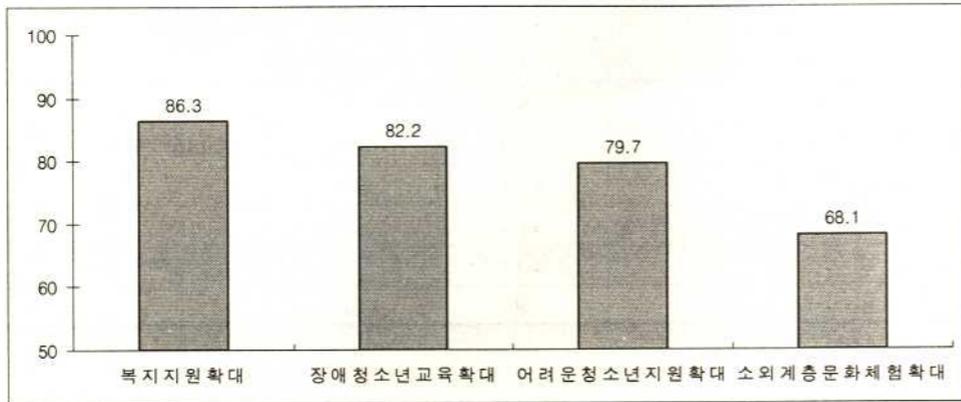
<표 13> 방과 후 참여 프로그램 확대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3.79	1.079	-1.674	
	여자	3.86	.940		
교급	1) 중학생	3.61	1.024	20.437***	1<2 1<3
	2) 고등학생	3.92	1.005		
	3) 대학생	3.98	.943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85	.995	11.468***	3<1 3<2
	2) 중·소도시	3.90	.992		
	3) 시·군의 읍·면	3.60	1.048		

***p<.001

4-2.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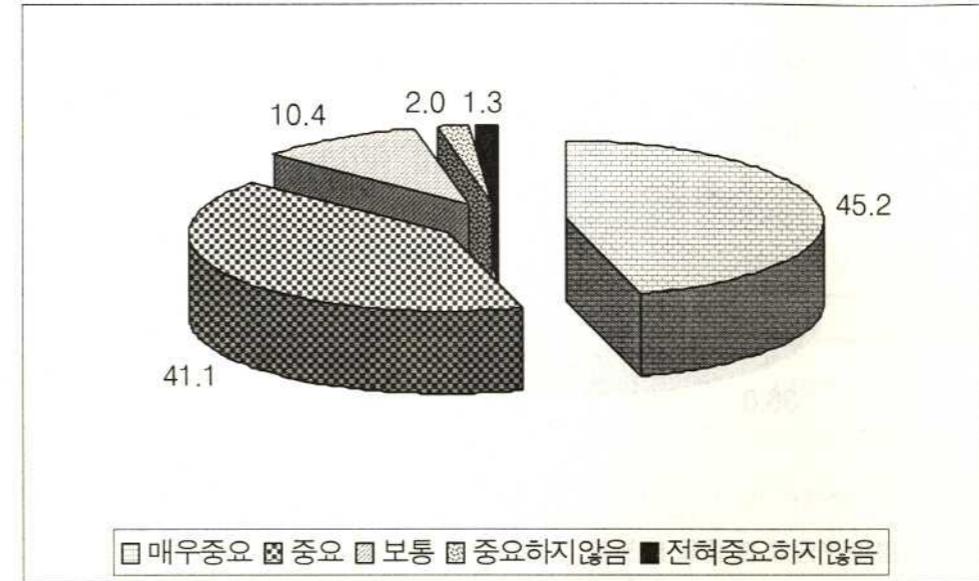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는 세부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저소득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지원, 장애청소년 및 개인·가정·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86.3%)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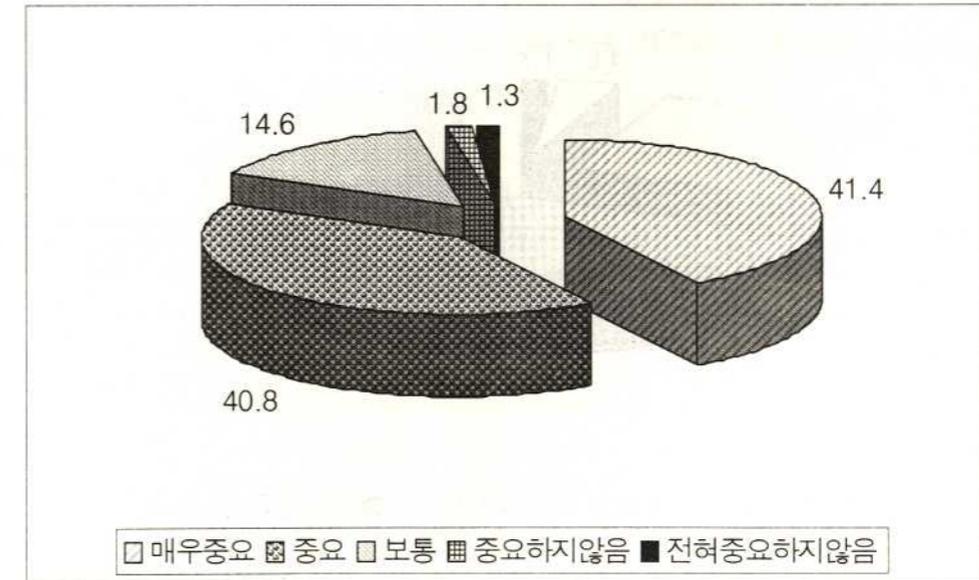
[그림 12]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표 14> 복지 및 사회문화 부문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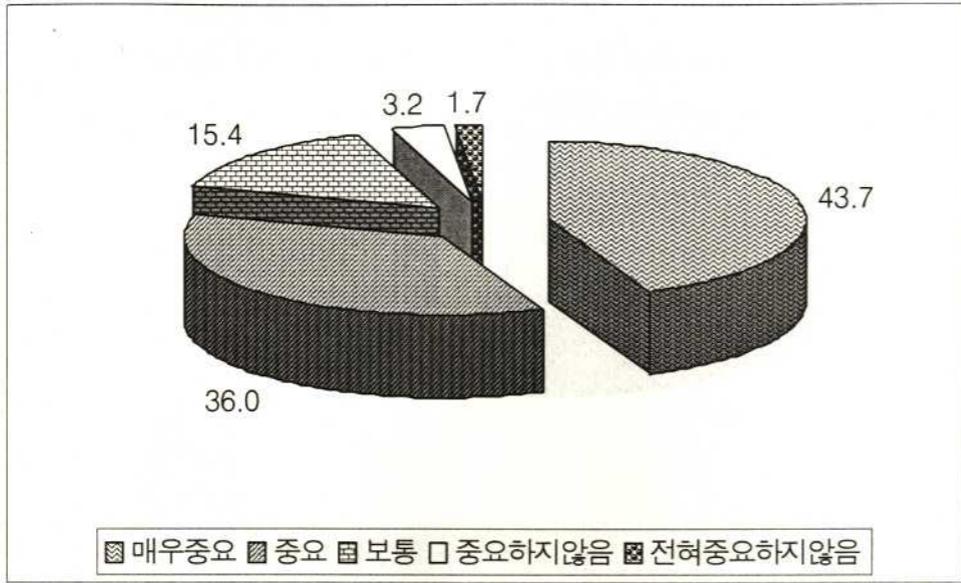
정책과제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족,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814 (45.2)	741 (41.1)	187 (10.4)	36 (2.0)	23 (1.3)	1,800 (100.0)	4.28	.82
장애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이동권 보장	746 (41.4)	735 (40.8)	262 (14.6)	33 (1.8)	24 (1.3)	1,800 (100.0)	4.18	.85
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785 (43.7)	648 (36.0)	277 (15.4)	58 (3.2)	30 (1.7)	1,798 (100.0)	4.16	.92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596 (33.2)	627 (34.9)	473 (26.3)	71 (4.0)	30 (1.7)	1,797 (100.0)	3.9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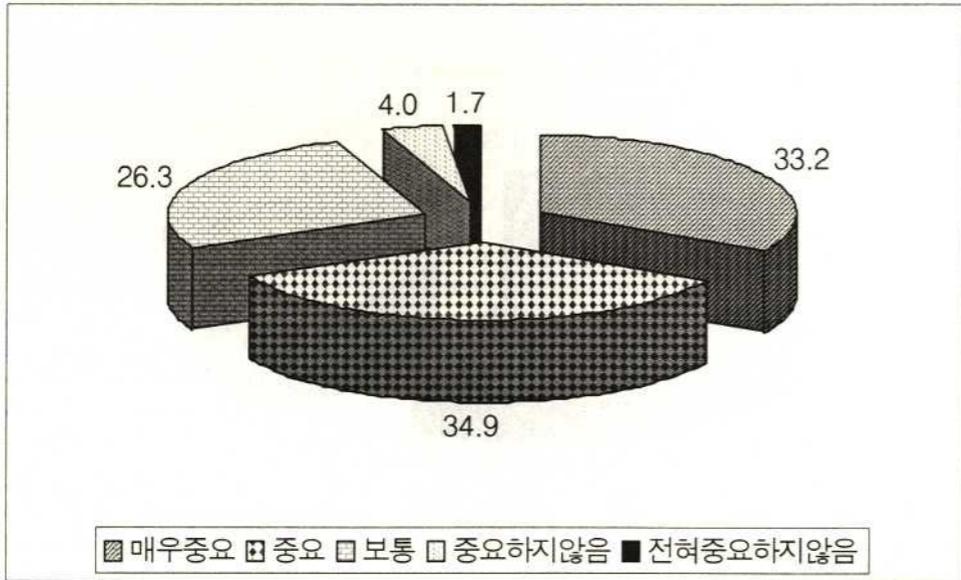
[그림 13] 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족,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의 중요도



[그림 14] 장애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의 중요도



[그림 15]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의 중요도



[그림 16]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의 중요도

저소득층 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의 복지지원 확대는 여자 청소년(M=4.30)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34), 또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38)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저소득층 가족,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의 복지 지원 확대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4.22	.850	-2.130*	
	여자	4.30	.795		
교급	1) 중학생	4.11	.892	23.252***	1<2 3<2
	2) 고등학생	4.39	.711		
	3) 대학생	4.22	.956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30	.748	24.696***	3<1 3<2
	2) 중·소도시	4.38	.714		
	3) 시·군의 읍·면	4.01	1.044		

* p<.05, ***p<.001

장애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M=4.28), 고등학생(M=4.29),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27)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장애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4.09	.865	-4.663***	
	여자	4.28	.830		
교급	1) 중학생	4.05	.945	15.322***	1<2 1<3
	2) 고등학생	4.29	.727		
	3) 대학생	4.20	.949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23	.783	16.156***	3<1 3<2
	2) 중·소도시	4.27	.777		
	3) 시·군의 읍·면	3.97	1.024		

***p<.001

유기, 방입, 학대, 부모가출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는 여자 청소년(M=4.27)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생(M=4.30), 중·소도시(M=4.28)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4.06	.945	-4.802***	
	여 자	4.27	.881		
교 급	1) 중 학 생	3.96	1.002	24.888***	1<2 1<3
	2) 고등학생	4.27	.800		
	3) 대 학 생	4.30	1.018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19	.879	13.821***	3<1 3<2
	2) 중·소도시	4.28	.827		
	3) 시·군의 읍·면	3.97	1.051		

***p<.001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는 여자 청소년(M=3.99)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02), 대학생(M=4.02)이 중학생(M=3.79)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M=4.08), 대도시(M=3.88)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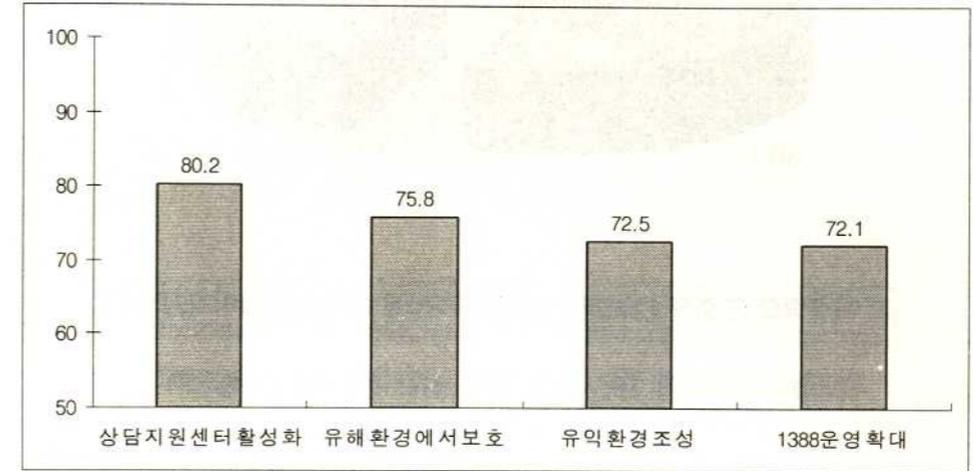
〈표 18〉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3.87	.989	-2.622**	
	여 자	3.99	.905		
교 급	1) 중 학 생	3.79	1.021	11.971***	1<2 1<3
	2) 고등학생	4.02	.890		
	3) 대 학 생	4.02	.937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88	.924	12.709***	1<2 3<2
	2) 중·소도시	4.08	.871		
	3) 시·군의 읍·면	3.80	1.081		

** p<.01 ***p<.001

4.3. 환경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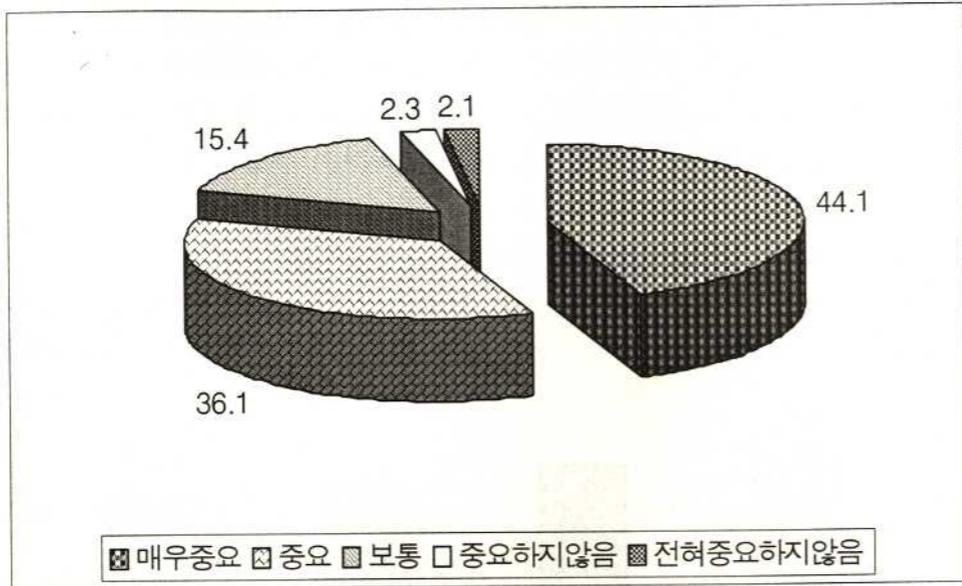
환경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있어 청소년들은 세부정책과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위기(가능)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확대(80.2%)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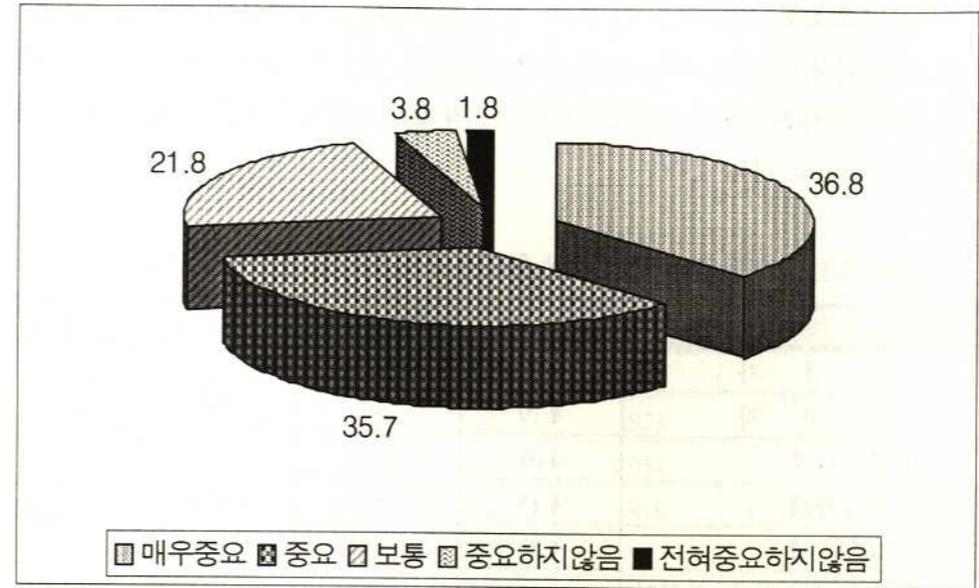
〔그림 17〕 환경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과제 중요도(%)

〈표 19〉 환경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과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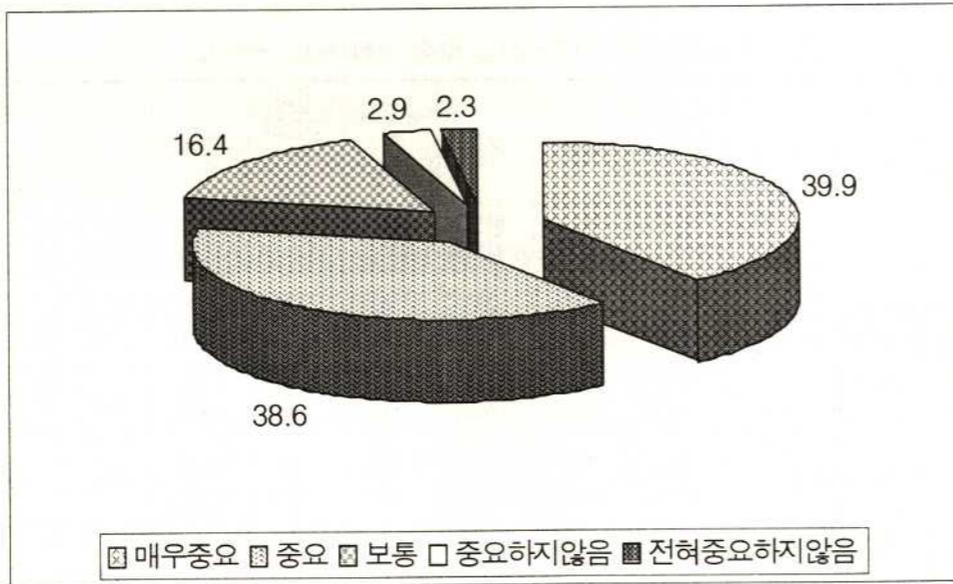
정책과제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활성화	792 (44.1)	649 (36.1)	277 (15.4)	42 (2.3)	37 (2.1)	1,797 (100.0)	4.18	.92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717 (39.9)	694 (38.6)	295 (16.4)	52 (2.9)	41 (2.3)	1,799 (100.0)	4.11	.93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정책	662 (36.8)	642 (35.7)	391 (21.8)	69 (3.8)	33 (1.8)	1,797 (100.0)	4.02	.95
청소년 문제해결전화(1388)의 운영 확대 및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 강화	709 (39.5)	585 (32.6)	366 (20.4)	88 (4.9)	48 (2.7)	1,796 (100.0)	4.0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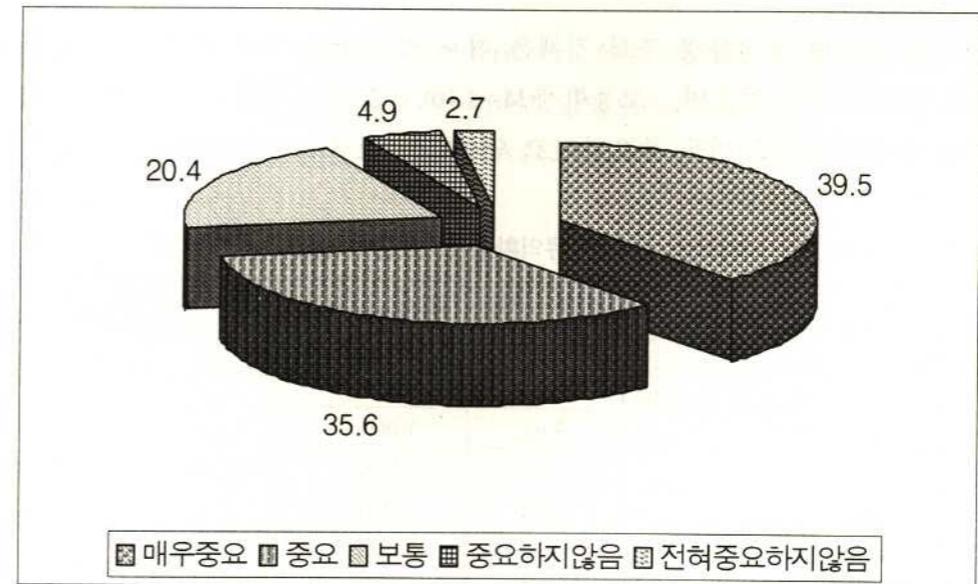
[그림 18]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활성화의 중요도



[그림 20]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도



[그림 19]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의 중요도



[그림 21] 1388전화의 운영 확대 및 홍보강화의 중요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은 여자 청소년(M=4.19)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생(M=4.20)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M=4.21), 대도시(M=4.13)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4.03	-3.719***		
	여자	4.19			.860
교급	1) 중학생	4.01	5.229**	1<2	
	2) 고등학생	4.15		.857	1<3
	3) 대학생	4.20		.957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13	14.412***	3<1	
	2) 중·소도시	4.21		.867	3<2
	3) 시·군의 읍·면	3.89		1.099	

** p<.01 ***p<.001

지자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정책은 여자 청소년(M=4.05)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1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11)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지자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정책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3.98	-1.503		
	여자	4.05			.923
교급	1) 중학생	3.93	7.646***	1<2	
	2) 고등학생	4.10		.900	3<2
	3) 대학생	3.94		.990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04	11.300***	3<1	
	2) 중·소도시	4.11		.879	3<2
	3) 시·군의 읍·면	3.82		1.056	

***p<.001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여자 청소년(M=4.28)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24),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29)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의 중요도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4.07	-4.882***		
	여자	4.28			.873
교급	1) 중학생	4.03	13.209***	1<2	
	2) 고등학생	4.24		.819	1<3
	3) 대학생	4.31		.927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21	15.766***	3<1	
	2) 중·소도시	4.29		.811	3<2
	3) 시·군의 읍·면	3.96		1.105	

***p<.001

청소년 문제해결전화(1388)의 운영확대 및 홍보 강화에 대하여 여자 청소년(M=4.16)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M=4.13), 또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M=4.18)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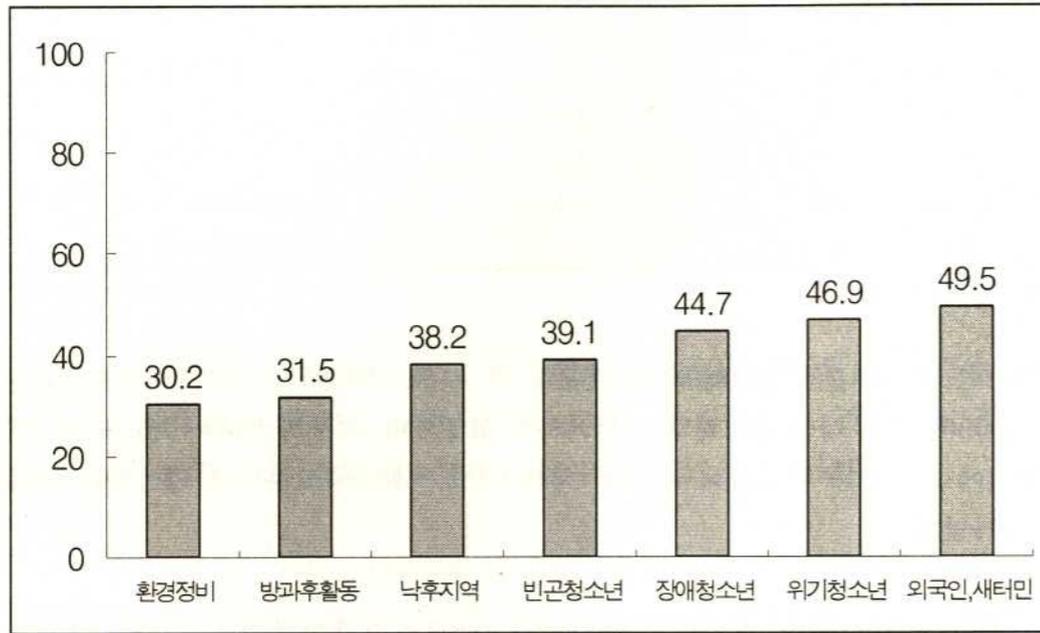
〈표 23〉 청소년 문제해결전화(1388)의 운영확대 및 홍보 강화의 중요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별	남자	3.87	-6.191***		
	여자	4.16			.941
교급	1) 중학생	3.79	23.974***	1<2	
	2) 고등학생	4.13		.943	1<3
	3) 대학생	4.13		1.026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3.96	18.614***	3<1, 2	
	2) 중·소도시	4.18		.894	1<2
	3) 시·군의 읍·면	3.80		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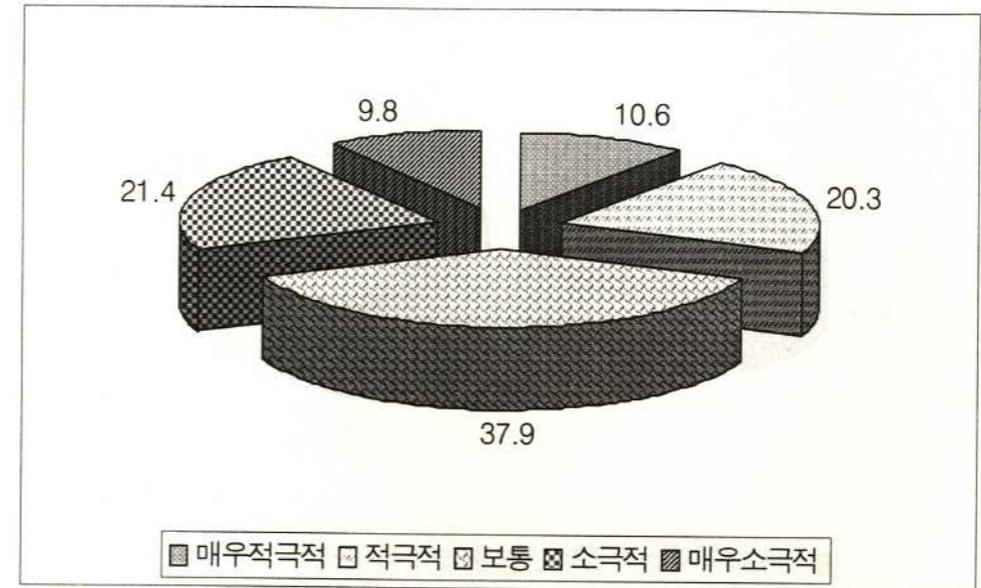
***p<.001

4]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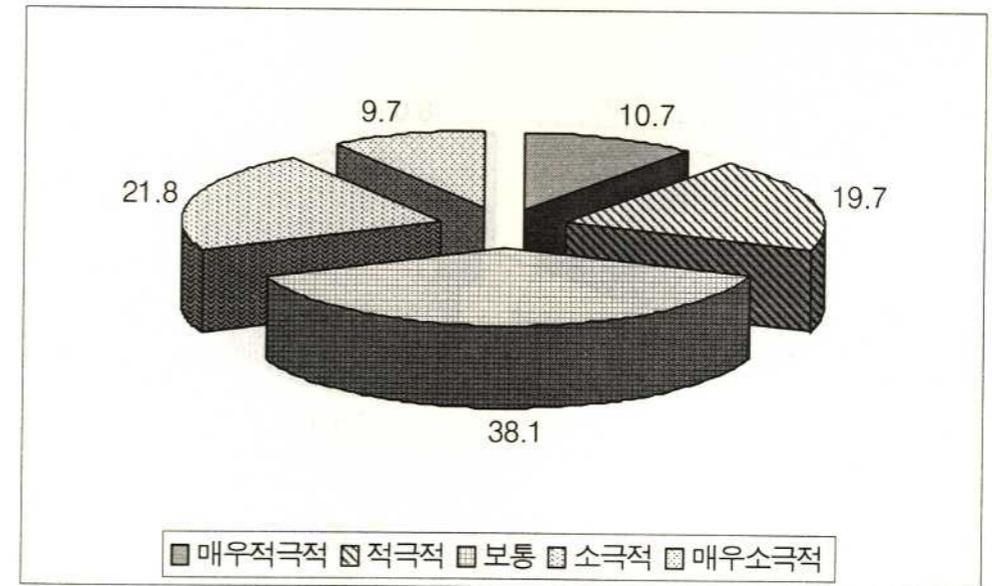
2006청소년특별회의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제시된 7가지 주요 정책과제 모두에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과제별 정부와 사회의 노력정도를 '소극적이다', '아주 소극적이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인가정과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지원(49.5%), 가출 등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46.9%),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44.7%)의 순으로 소극적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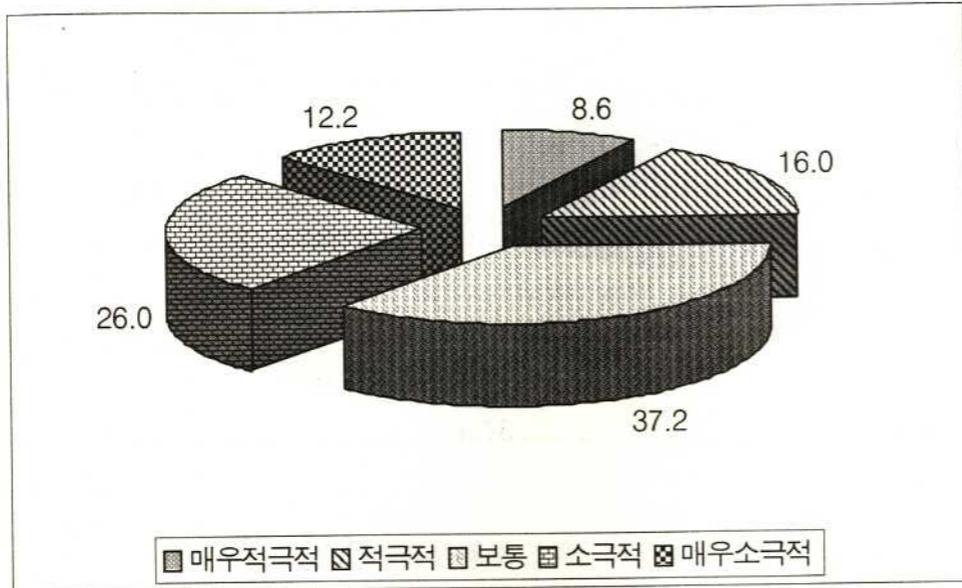
[그림 22]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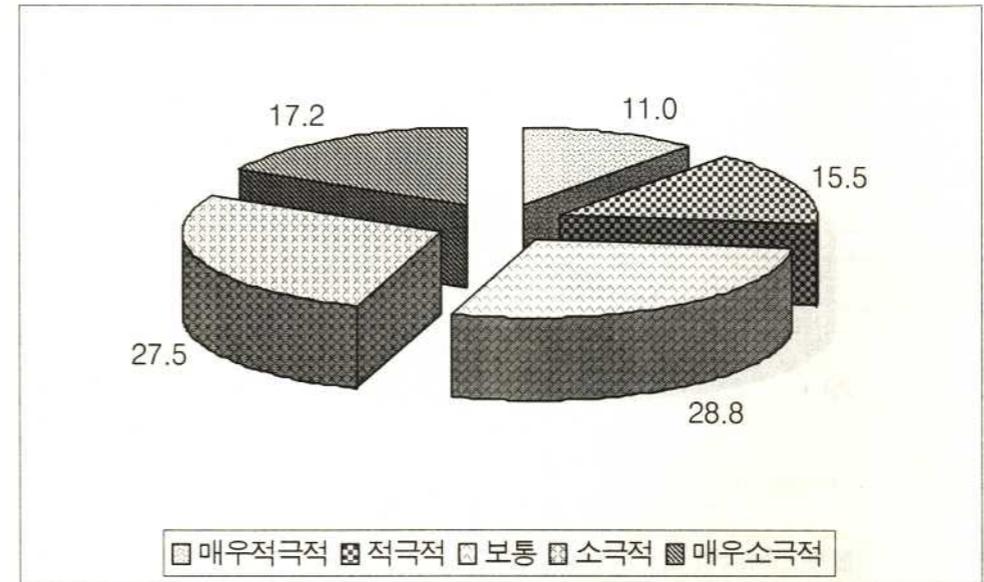
[그림 23]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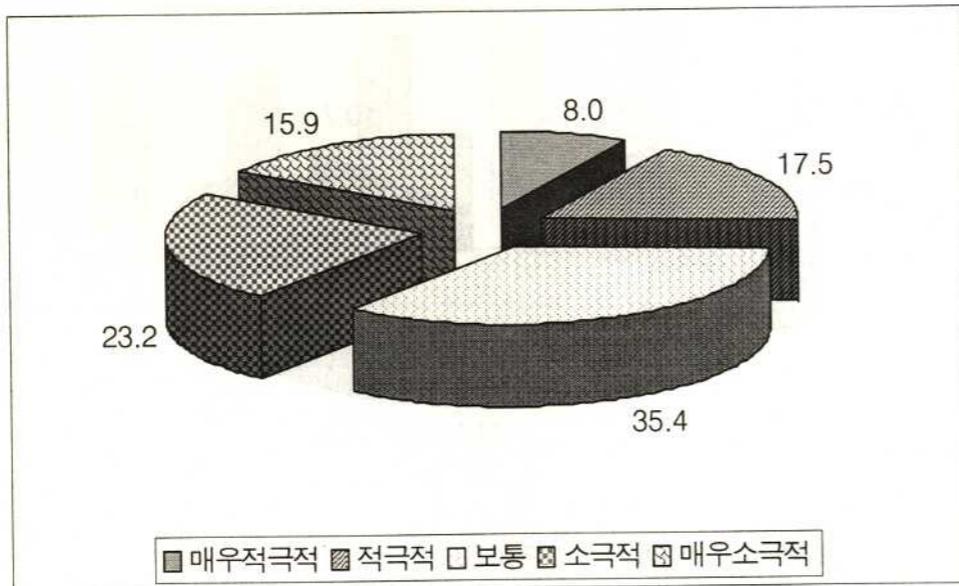
[그림 24]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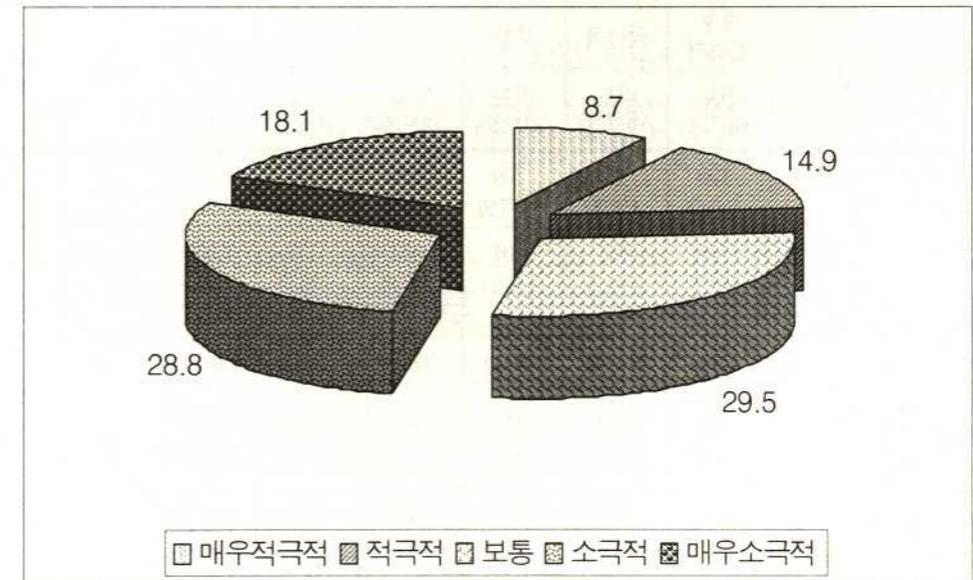
[그림 25] 농어촌, 빈곤지역의 교육/의료/문화환경 개선의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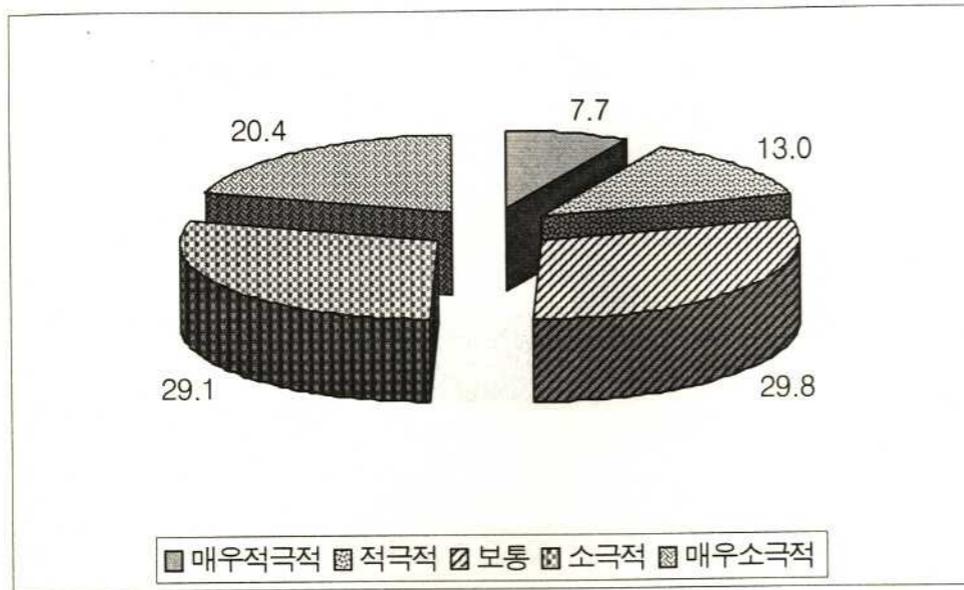
[그림 27]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노력 정도



[그림 26]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노력 정도



[그림 28]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노력 정도



[그림 29]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노력 정도

<표 24>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 정도

정책과제 중요도	매우 적극적	적극적	보통	소극적	매우 소극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96 (10.6)	377 (20.3)	703 (37.9)	396 (21.4)	181 (9.8)	1,853 (100.0)	3.01	1.11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198 (10.7)	363 (19.7)	704 (38.1)	402 (21.8)	179 (9.7)	1,846 (100.0)	3.00	1.11
농어촌, 빈곤지역의 교육/의료/문화환경 개선	159 (8.6)	295 (16.0)	688 (37.2)	481 (26.0)	225 (12.2)	1,848 (100.0)	2.83	1.11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148 (8.0)	323 (17.5)	655 (35.4)	430 (23.2)	295 (15.9)	1,851 (100.0)	2.78	1.15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	203 (11.0)	286 (15.5)	533 (28.8)	509 (27.5)	318 (17.2)	1,849 (100.0)	2.76	1.22
가출 등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60 (8.7)	275 (14.9)	543 (29.5)	530 (28.8)	334 (18.1)	1,842 (100.0)	2.67	1.19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143 (7.7)	240 (13.0)	551 (29.8)	538 (29.1)	377 (20.4)	1,849 (100.0)	2.59	1.17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 정도는 남자청소년(M=3.03)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3.19), 시·군의 읍·면청소년(M=3.08)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3.03	1.165	1.214	
	여 자	2.96	1.051		
교 급	1) 중 학 생	3.19	1.066	15.253***	2<1 3<1
	2) 고등학생	2.89	1.120		
	3) 대 학 생	2.91	1.121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97	1.098	2.101	2<3
	2) 중·소도시	2.93	1.157		
	3) 시·군의 읍·면	3.08	.998		

***p<.001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는 남자청소년(M=2.78)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3.13), 시·군의 읍·면청소년(M=2.81)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78	1.161	.431	
	여 자	2.76	1.132		
교급	1) 중 학 생	3.13	1.019	54.587***	2<1, 3 3<1
	2) 고등학생	2.53	1.186		
	3) 대 학 생	2.80	1.071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78	1.162	1.578	
	2) 중·소도시	2.69	1.164		
	3) 시·군의 읍·면	2.81	1.077		

***p<.001

농어촌, 빈곤지역의 교육·의료·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는 남자 청소년(M=2.82)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2.95), 시·군의 읍·면청소년(M=2.89)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농어촌, 빈곤지역의 교육·의료·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82	1.124	.117	
	여 자	2.81	1.087		
교 급	1) 중 학 생	2.95	1.064	7.004**	2<1 3<1
	2) 고등학생	2.78	1.134		
	3) 대 학 생	2.68	1.082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78	1.055	1.476	
	2) 중·소도시	2.78	1.147		
	3) 시·군의 읍·면	2.89	1.089		

p<.01, *p<.001

유기, 방임, 학대, 부모 가출 등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는 여자청소년(M=3.01)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3.09), 시·군의 읍·면청소년(M=3.11)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97	1.154	-.786	
	여 자	3.01	1.060		
교 급	1) 중 학 생	3.09	1.089	4.372*	2<1 3<1
	2) 고등학생	2.97	1.114		
	3) 대 학 생	2.87	1.125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99	1.115	4.321*	2<3
	2) 중·소도시	2.90	1.105		
	3) 시·군의 읍·면	3.11	1.074		

*p<.05, ***p<.001

장애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도는 남자청소년(M=2.80)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2.97), 시·군의 읍·면청소년(M=2.94)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장애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80	1.225	2.057*	
	여 자	2.69	1.217		
교 급	1) 중 학 생	2.97	1.166	15.820***	2<1 3<1
	2) 고등학생	2.66	1.247		
	3) 대 학 생	2.55	1.202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65	1.198	6.999**	2<3
	2) 중·소도시	2.70	1.210		
	3) 시·군의 읍·면	2.94	1.257		

*p<.05, **p<.01, ***p<.001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2.66) 중학생(M=2.84), 시·군의 읍·면청소년(M=2.84)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66	1.190	.088	
	여 자	2.66	1.171		
교 급	1) 중 학 생	2.84	1.169	13.490***	2<1 2<3
	2) 고등학생	2.53	1.196		
	3) 대 학 생	2.73	1.100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59	1.175	6.134**	2<3
	2) 중·소도시	2.60	1.170		
	3) 시·군의 읍·면	2.84	1.164		

p<.01, *p<.001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에 관한 인식은 남자청소년(M=2.61)의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M=2.77), 시·군의 읍·면청소년(M=2.69)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외국인가정, 새터민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부의 노력 정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F	LSD
성 별	남 자	2.61	1.175	1.239	
	여 자	2.54	1.154		
교 급	1) 중 학 생	2.77	1.183	13.362***	2<1 3<1
	2) 고등학생	2.47	1.145		
	3) 대 학 생	2.47	1.139		
거주지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52	1.126	2.974	2<3
	2) 중·소도시	2.54	1.181		
	3) 시·군의 읍·면	2.69	1.168		

***p<.001

< MEMO >

